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 결과보고서 |



2019. 10. 30. |수| 14:00 ~16: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 결과보고서 |

2019. 10. 30. |수| 14:00 ~16: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일시 2019. 10. 30 |수| 14:00~16:00

장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0월 30일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인 국회 세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주요한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제출 및 의원 발의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재정건전성 유지 및 과세기반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개회사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축사
이춘석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축사
김광림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



축사
장병완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



축사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사회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발제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발제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토 론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 론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토 론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토 론
박형수 前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토 론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Contents

개회사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9
축 사	이춘석	국회기획재정위원장	13
	김광림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	17
발 제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21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37
토 론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3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55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57
	박형수	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59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	69
회의록			75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회사

이 종 후

국회예산정책처장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정책처장 이종후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이춘석 국회기획재정위원장님, 김광림·장병완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원윤희 교수님과 토론에 참석해주신 김정우 의원님, 추경호 의원님, 채이배 의원님, 박형수 교수님, 박명호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님,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 및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인구고령화 및 투자둔화로 인해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재정 또한 최근 국세수입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재정지출이 수입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 및 재정여건 하에서는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면서도,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는 조세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2019년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세제개편을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소비 진작 및 투자활성화, 경제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경기진작, 고용 지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기능 강화 등 정부안과 비교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다수의 의원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세법개정안 심의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종 후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축사 1

이 춘 석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춘석입니다.

여러 의원님과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한 지혜와 식견을 공유하기 위해 열리는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정성으로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국회예산정책처 이종후 처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재정연구포럼 대표 김광림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기꺼이 발제를 맡아 주신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님과 정문종 실장님, 그리고 사회를 맡아 주신 원윤희 교수님과 토론자로 함께 해 주신 김정우 의원님, 추경호 의원님, 채이배 의원님, 박형수 교수님, 박명호 교수님께도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갈등과 노딜 브렉시트 우려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성장률 둔화로 체감 내수경기에 활력을 잃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잠재 성장률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향후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 역시 커져가고 있습니다.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세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합니다. 그렇기에 향후 안정적인 국가재정 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이번 토론회가 무척 반갑습니다.

금년,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경제활력 회복·혁신성장 지원’ 및 ‘경제·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 그리고 ‘조세체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등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조세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안을 담아 발의해 주신 다수의 세법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저는 기재위원장으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취합된 다양한 제언과 고견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깊이 숙고하고 세법개정안 심사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내 최고로 꼽히는 세법 전문가 여러분께서 한자리에 어렵게 모이신 만큼, 날카로운 통찰과 현실감각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이 춘 석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축사 2

김 광 립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

축 사

안녕하십니까. 김광립 의원입니다.
장병완 의원님과 함께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론회는 2004년 국회예산정책처 개청과 함께 16년 동안 매년 개최되는 세법 관련 토론회중 언론과 전문가로부터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명실상부 최고의 재정토론회입니다.

2016년 20대 국회 개원부터는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원님들의 공부모임인 경제 재정연구포럼과 공동주최 관례를 이어 오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토론회보다 금년에는 참으로 무거운 마음입니다.
1주일전 발표된 성장률 3/4분기 속보치가 전기비 0.4%에 그치면서 2차례 석유파동, IMF 외환위기와 같은 감당못할 외부 충격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경제성장률이 1% 대로 떨어질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세법개정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IMF와 OECD와 같은 국제기구 또한 확장적 재정을 권고하며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세계의 재정확대 방안에 대해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재정확대 여력이 높은 나라로 손꼽히는 독일과 네덜란드 모두 세출예산 보다 세법개정을 통한 조세지출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최고 33%에서 중소기업 적용분부터 25%로 낮추겠다고 합니다. 통일재원을 위해 도입한 연대세는 폐지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덜란드도 30억유로(4조원) 규모의 가계 감세를 발표했습니다.

기업과 가계의 세금부담을 낮추어 투자와 소비를 늘리는 방안도 엄연히 재정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은행 맬패스 총재도 언론(WSJ)과의 인터뷰에서 “선진국들이 정부 지출과 세제를 더 성장 친화적으로 바꾼다면 경제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서도 소비를 끌어올리고 투자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조세지출 확대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결과는 포럼 소속된 의원님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의정활동에 곧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늘 실사구시적인 토론내용을 채워주시느라 수고해주고 계시는 예산정책처 이종후 처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활기가 넘치고, 우리 경제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들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 **김 광 립**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발제 1

임 재 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2019년 세법개정안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1

CONTENTS

1. 추진과정 및 기본방향
2.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2-1.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 2-2.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 2-3.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3.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2

추진과정 및 기본방향

- 조세 정책 여건
- 추진과정
- 기본방향

3

조세 정책 여건

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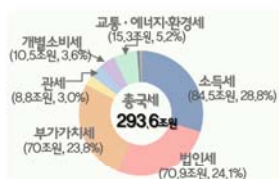
- '13년 이후 상승 → '18년 20.0% → '23년 19.4% 전망
- OECD 평균('17년, 25%)보다 낮은 수준

국민부담률 (%)



-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세목별 비중('18년 결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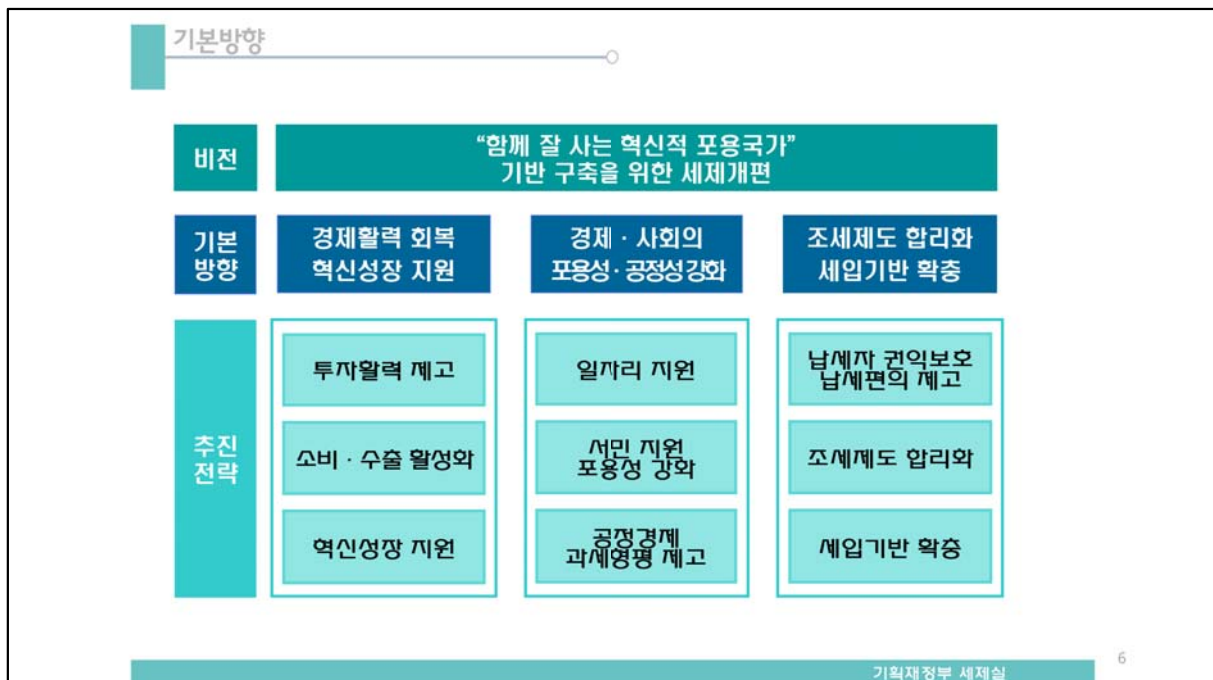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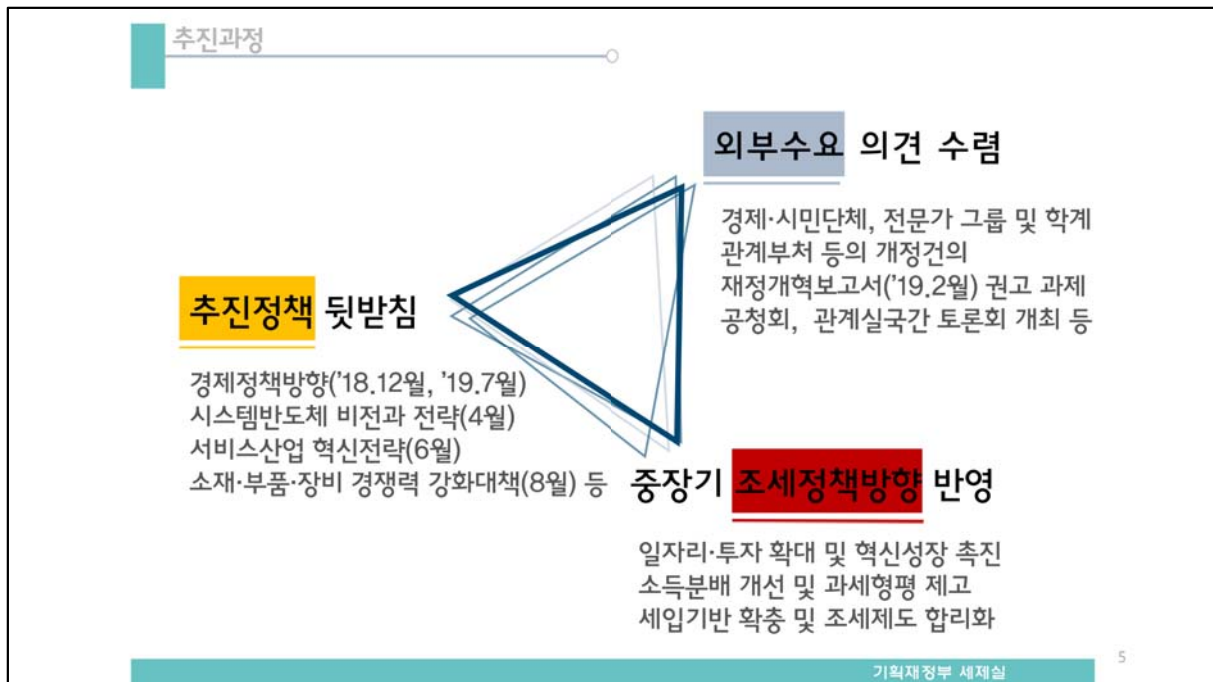
- 3대 세목 비중 :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 [소득세] 완만한 상승추세
- ▶ [부가가치세] 비교적 안정적, 지방소비세 이양으로 소폭 하향
- ▶ [법인세] 16년 이후 비중 증가하여 '18년에 VAT 비중보다 높아짐

국세수입 실적 및 전망(조원)



- '20년 국세수입 : 292조원 전망(예산안)

4



2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 경제 · 사회의 포용성 · 공정성 강화
-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7

2-1.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 투자활력 제고
- 소비·수출 활성화
- 혁신성장 지원

8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투자활력 제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조정]

- 생산성향상시설(자동화설비 등) 투자시 대기업 1% / 중견기업 3% / 중소기업 7% 세액공제
→ '2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공제율 1년간('20.1.1.~'20.12.31.) 한시 상향

기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① 법 시행일 이후 1년간	2%	5%	10%
② ① 이후	1%	3%	7%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일몰 2년 연장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 및 물류산업 첨단설비** 추가
* 기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적용기한 종료
-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송유·열수송관, LPG·위험물시설 등 사고위험 시설 추가**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설비(기술유출방지시설) 제외

[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6개월 한시 확대('19.7.3.~'20.12.31.) 및 일몰연장('19년 말 → '20.6월 말)]

- 내국인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가속상각**(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 **확대**
* (대상자산) 대기업(혁신성장 투자자산 → **생산성향상·에너지절약시설 추가**), 중소·중견기업(사업용 고정자산)
* (한도) 기준내용연수의 50% → **중소·중견기업 75%로 확대**

기획재정부 세제실

9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투자활력 제고

[기업상속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 기업의 **사후관리기간 단축** 및 **업종·고용·자산 유지의무 완화**
* 탈세·회계부정 등 **불성실한 기업인 기업상속공제 배제** — **준법경영책임 강화**

구분	현행	개정
사후관리기간 단축	· 10년	· 7년
업종변경범위 확대	· 소분류(표준산업분류) 내 변경 허용	· 중분류 내 변경 허용 · 위원회 승인 하에 중분류 밖 변경도 허용
자산유지의무 완화 · 20%이상 처분 금지	· 수용·사업장 이전시 대체취득, 내용연수 경과자산 등 처분 예외 허용	· 불가피한 처분 예외 확대 · (예)업종변경에 수반되는 처분
고용유지의무 완화	· 매년 정규직근로자 80%이상 유지 · 사후관리기간 평균 정규직근로자 100%이상 유지 (중견기업은 120%)	· (좌 동) · 중견기업도 120%→100%
불성실기업인 기업상속 배제 · (신 설)		· 상속인·피상속인이 탈세 및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배제(사전·추징(사후))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

- 제도 **적용대상 확대**(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 **모든 중견·중소기업**) 및 **요건 완화**
* (피상속인) 10년 이상 최대주주·10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 **5년 이상**으로 단축
* (상속인)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 **요건 삭제**

기획재정부 세제실

10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투자활력 제고

[주류 과세체계 개편]

- 맥주·탁주에 대해 기존 종가세 → **종량세**로 과세체계 개편(세수중립적)
 - * (서울) 탁주 1ℓ당 41.7원 / 맥주 1ℓ당 830.3원 (* 매년 물가(CPI)에 연동·조정)
 - * 생맥주 서울 2년간 한시 경감(1ℓ당 644.2원)을 통해 개편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 최소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

- 창업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제도 적용 업종**에 서비스업종 **대폭 확대**
 - * (대상업종) 제조업, 음식점업 등 682개 업종 → 경영컨설팅업,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등 **97개 서비스업종 추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 증여 금액 중 **5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및 나머지 금액 **10% 세율로 과세**
-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 확대** 및 **창업·자금사용 의무기한 확대**
 - * (대상업종) 경영컨설팅업,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종 추가(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과 동일)**
 - * (의무기한) 1년 이내 창업 + 3년 이내 자금사용 → **2년 이내 창업 + 4년 이내 자금사용**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확대]

- 중소기업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및 **분납기간 연장**
 - * (요건) 10년(수도권 밖 이전)·3년(동일 산단 내 이전) 이상 운영한 공장 → **2년 이상 운영한 공장**
 - * (분납기간) 2년 거치 2년 분할납부 →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양도세 분납기간 연장**
 - * (분납기간)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 →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

기획재정부 세제실

11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소비·수출 활성화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및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확대]

-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3,000 → **\$5,000** (*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600) 포함 시 총 구매한도 \$5,600)
-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건당 30만원, 총구매액 100만원 → **건당 50만원, 총구매액 200만원**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및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1년 연장**(~'20.12월까지)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대]

- 수출비중 30%(중견 50%)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일정요건** 충족 시 수입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
 -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및 신청기한 연장**
 - * (적용요건) 최근 2년간 국제·관세 체납 없음 것 →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체납세액 납부 시 적용대상 포함**
 - * (신청기한) 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 → **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부담 규정 신설]

- (대상)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화물**을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 후 **검사 시 검사비용**(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등)
- (예외) 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 위반 시** 국가 지원대상에서 **제외**

기획재정부 세제실

12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혁신성장 지원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등 확대]

- 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개발비를 일반연구비보다 우대하여 공제 적용(최대 40%)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대기업 5% / 중견기업 7% / 중소기업 10%)
 - ⇒ 세액공제 대상 및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 (대상기술) 혁신성장 관련 기술 추가
 - (이월기간) 5년 ⇒ 10년 확대
 - (위탁연구비) 국내기관 위탁연구비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 ⇒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위탁연구비도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외부위탁 R&D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과학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분야(예: 콘텐츠 창작 등)도 외부위탁 연구비에 대해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세제지원

[핵심 소재·부품·장비 R&D 비용 세액공제 및 시설투자 지원]

-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및 사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 (R&D 법인세 공제율) 대·중견기업 20%+최대10%, 중소기업 30%+최대10%
 - (시설투자 법인세 공제율)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기획재정부 세제실

13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혁신성장 지원

[내국법인의 소재기업 등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 신설(3년간 한시적용)]

- 둘 이상의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공동출자 시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 (사후관리) 피출자법인이 일정기간까지 출자금액의 80%를 R&D비용 또는 설비투자에 사용하지 않거나, 내국법인이 5년 이내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 또는 4년 이내 해당지분 처분 시 세액공제액 추징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 신설(3년간 한시적용)]

- 국내 기술력, 산업기반이 미흡한 품목 관련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수 시 인수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율)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인수금액 한도: 5,000억원)
 - (사후관리) 일정기간 내 피인수기업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되거나,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세액공제액 추징

[벤처캐피탈의 글로벌 전문기업 출자 시 비과세]

- 벤처캐피탈이 소·부·장 글로벌 전문기업(GTS기업) 출자 시(중소기업 한정)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시행시기) GTS기업 개념, 범위 등에 대한 「소재부품기업법」 개정 이후 그와 연계하여 조세법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세제실

14

2-2.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 일자리 지원
- 포용성 강화
- 공정경제·과세형평 제고

15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일자리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19년 말 → '22년 말)]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 상생형 지역일자리(예: 광주형 일자리)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 (공제율) 중견 1~2%, 중소 3% →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 시 **중견 5%, 중소 10%**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재고용 기업의 인건비 2년간 중소 30%·중견 15% 세액공제 및 재취업 여성 3년간 소득세 70% 감면
- 경력단절 **인정사유 확대** 및 경력단절기간·재취업대상 기업 **요건 완화**

	현행	개정
경력단절 인정사유	임신, 출산, 육아	'결혼, 자녀교육' 추가
경력단절 기간	퇴직 후 3~10년 이내	퇴직 후 3~15년 이내
재취업 요건	동일기업	동종업종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 감면** (* 청년은 5년간 90%)
-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 업종**(예: 도서관·사적지 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획재정부 세제실

16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포용성 강화

[점증구간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3만원 → 10만원)]

* (점증구간) 총급여액 500만원 미만 단독가구 / 총급여액 7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8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허용 및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300~400만원 → **현행 +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액 × 10%(300만원 한도)**
-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400만원 → 600만원)
-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 초과하는 경우 세제혜택 확대
* (현행) 퇴직소득세의 70% → (개정) 수령기간 10년 이하 시 70% / 10년 초과시 60% 적용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21년말까지)
* 연매출 4억원이하 개인음식점에 대해 우대공제율 적용(8/108 → 9/109) 및 모든 사업자 공제한도 5%p 우대
* 단, 과세유통장소 공제율 인하(4/104 → 2/102)
-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공제율 10/110) 적용기한 1년 연장('20년말까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6%p 상향(15% → 21%)]

* ('18년 세법개정 11% → 15% 세수효과) △3.5조원 ('19년 세법개정안 15% → 21%) △5.1조원

기획재정부 세제실

17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공정경제·과세형평 제고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 지정기부금단체의 추천 및 사후관리 검증을 국세청으로 일원화 및 국세청-주무관청간 정보공유 의무 신설
* (국세청)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시 주무관청 통보
(주무관청) 설립허가 취소, 공익목적 위반사항 적발결과 등 국세청 통보
-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 이원화(지정기간 6년 → 신규지정 3년 + 재지정 6년)
- 공시내용이 부실한 기부금단체에 대한 국세청의 기부금 사용 세부내역 요구권한 신설
- 공익법인 의무지출 및 의무공시·외부감사 제도 적용대상 확대
-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회계 감리 제도 도입(6년 자유선택 + 3년 국세청 지정)

[지주회사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방식 변경
*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축소
* (현행)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도시지역 밖 10배) → 수도권 도시지역 주택정착면적의 3배(그 외 지역 현행과 동일)
- 고가(9억원 초과) 겸용주택은 주택·상가를 구분하여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획재정부 세제실

18

2-3.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 조세제도 합리화
- 세입기반 확충

19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 마련]

-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및 **영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 입회 허용**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세무조사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한 **조사공무원 교체 요구 권한 부여**

[조세심판·심사청구 결정절차 투명성 제고]

- 조세심판 및 심사청구 절차의 중요사항 결정기관을 **합의체 기구로 변경**

구분	현행	개정
조세심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여부 * 심판원장+상임심판관 전원+비상임심판관 6인 이상	심판원장 * 심판원장+상임심판관 전원
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결)	국세청장 * 위원장(국세청 차장)+위원 10인

[기한 후 신고 시 납세자 부담 완화]

- 과세표준신고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제출한 자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감액 신청) 및 수정신고(중액 신청) 허용**
-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을 세분화**
* (1개월 이내) 50% 감면 (1~6개월 이내) 20% 감면 → (1~3개월 이내) 30% 감면 신설

기획재정부 세제실

20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 합리화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 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 할증률 하향조정, 지분율에 따른 차등 폐지, 중소기업 할증 배제 영구화 등 할증평가 합리화

현 행			개 정		
· 기업규모 및 지분율에 따라 차등 적용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최대주주 지분율	일반기업	중소기업	구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50%이하	20%	10%	할증률	20%	0%
50%초과	30%	15%			

· 중소기업은 '20년말까지 할증 배제(조특법)

· 중소기업 할증 배제 영구화(상증법에 반영)

[국세청 통계자료 공개 및 과세정보 공유 확대]

- 연구기관 등에 **국내청 내 보안시설**에서 **기초자료**(소득·법인·부가가치세 등 상세 신고내역 등) **제공**
- 국세청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기관 범위(국가행정기관)** 및 **제공사유(과징금(183개 법)의 부과·징수 등)** 확대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손금인정이 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기준 상향**(연간 1,000만원 → **1,500만원**)

[국제거래 자료제출 이행력 제고]

-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후 과세당국의 **시정요구 불응 시 과태료 추가 부과 규정 신설**(최대 2억원)
-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 시 **이전가격 추정과세 근거 신설**
 * (방법)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유사한 법인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정상가격 추정

기획재정부 세제실

21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세입기반 확충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 근로소득에서 일정률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에 **2,000만원 한도 신설**

총급여	500만원 이하	500~1,500만원	1,500~4,500만원	4,500~1억원	1억원 초과
공제율	70%	40%	15%	5%	2%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강화]

-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지급배수 하향(3배 → **2배**)
 * (한도)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12년 이후 근속연수 × **2**(지급배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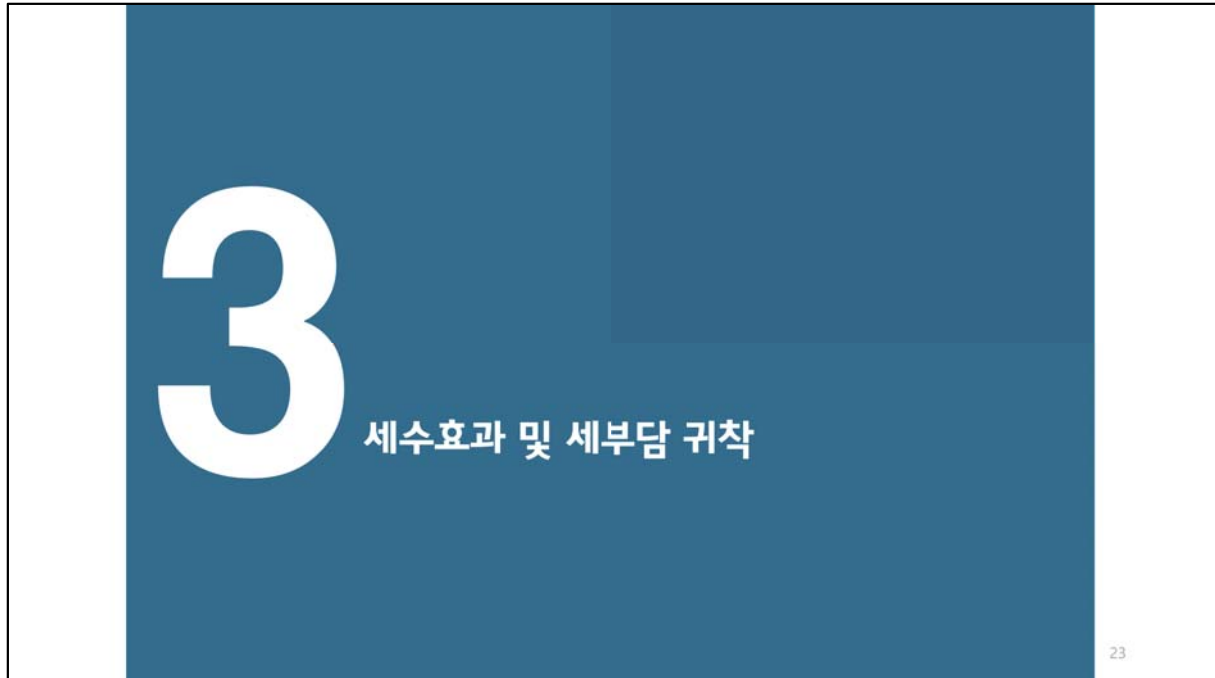
-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특허권과 별개의 '**유사한 재산·권리**'에 대한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침해**에 따른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국내에서 과세권 확보

[사실과 다른(거짓) 계산서 가산세 대상 확대]

- 복식부기의무자(업종별 수입금액 7.5천만~3억원 이상) →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 및 비사업자도 포함**

기획재정부 세제실

22



세 수 효 과

세수효과 산정방법

- ▶ (순액법) 직전연도 대비 증감 계산
: 연도별 세수변화 파악
- ▶ (누적법) 기준연도('19년) 대비 증감 계산
: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누적총량 파악

금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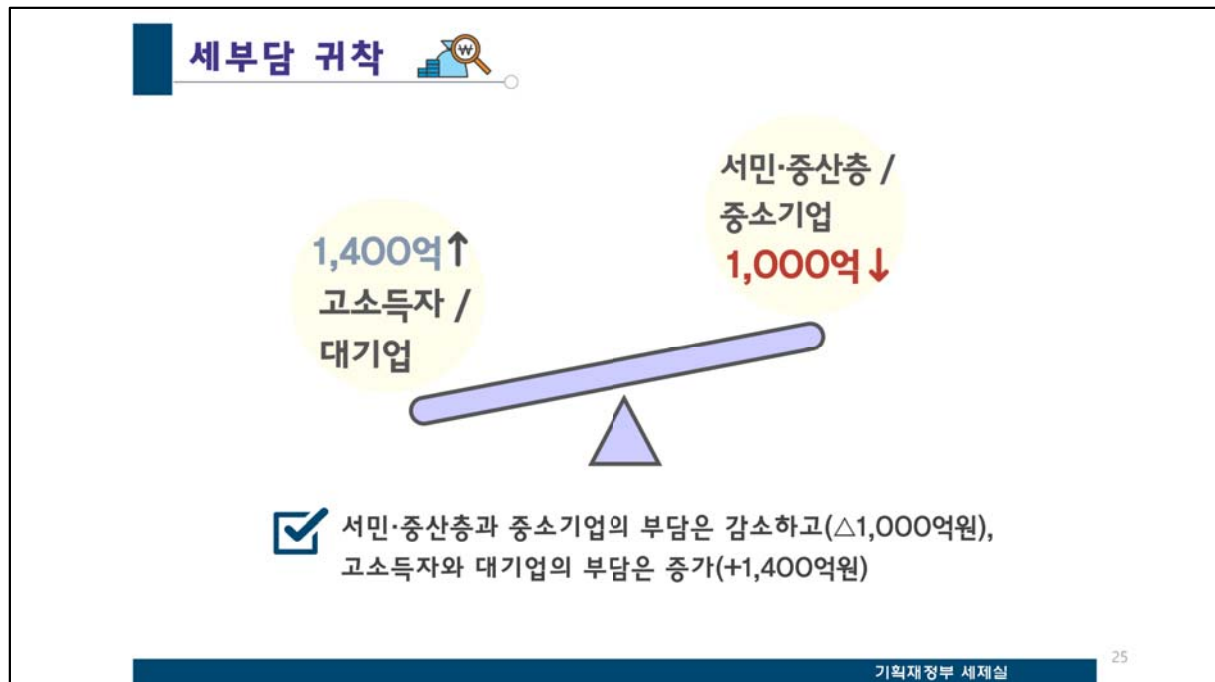
: 향후 5년간 **순액법 약 + 40억원** ('20년 △ 1,400억원)
누적법 약 △ 4,700억원

※ 지방소비세율 조정으로 인한 국세의 지방세 이전(연간 △5,150원) 미포함

- **증가 요인** : 근로소득공제 정비(+ 640억원),
임원 퇴직소득 과세 강화(+ 360억원) 등
- **감소 요인**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5,320억원, 1년 한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 500억원),
사적연금 세제지원 확대(△ 440억원) 등

기획재정부 세제실

24



감 사 합 니 다.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발제 2

정 문 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2019년 세법개정안 분석

정문중

추계세제분석실장



국회예산정책처

Contents

- I. 중기 경제 · 재정여건
- II. 2020년도 세입전망 · 세입여건
- III. 2019년 세법개정안 분석
- IV.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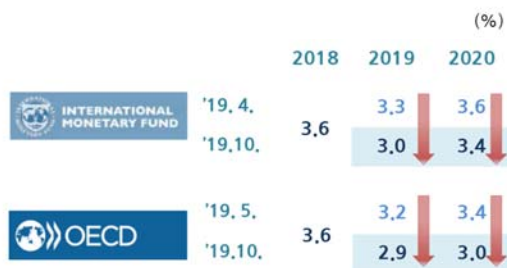
I

중기 경제 · 재정 여건

I-1. 경제여건

세계경제는 교역 위축, 무역갈등 심화 등 성장경로 불확실성 증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또한 추세적 하락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s(2019.10.)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2019.10.)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전망 (%)



주: 2019년 이후 점선은 NABO 전망치
자료: NABO, 「2020년 및 중기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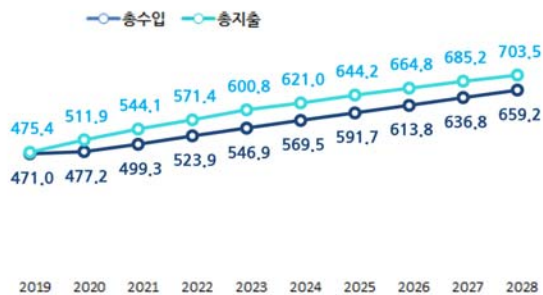
I-2. 재정여건

총지출이 총수입 보다 빠르게 증가, 국세수입 증가율은 둔화

- 총지출 증가율: ('14~'18년) 5.7% ⇒ ('19~'28년) 4.5%
- 총수입 증가율: ('14~'18년) 6.9% ⇒ ('19~'28년) 3.8%
- 국세수입 증가율: ('14~'18년) 9.3% ⇒ ('19~'28년) 3.5%

총수입·총지출 전망('19~'28년)

(조원)



자료 : NABO, 「2019~202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국세수입 전망('19~'23년)

(조원)



NABO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3

I-2. 재정여건

NABO 전망 결과 재정수지 악화, 국가채무 확대

-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적자 전환, 관리재정수지 적자 또한 심화될 전망
-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년) 38.0% ⇒ ('28년) 56.7% 증가할 전망

재정수지 전망(NABO)

(조원)



주 : 통합재정수지 = 총수입 - 총지출,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자료 : NABO, 「2019~202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추이(NABO)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



NABO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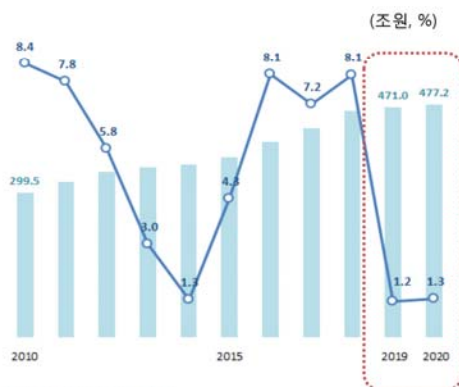
II

2020년도 세입전망·세입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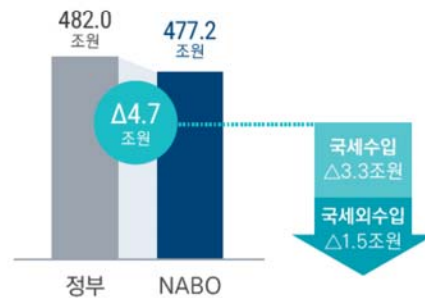
II-1. 2020년도 세입전망: 총수입

NABO 전망 2020년 총수입은 477.2조원
정부 세입예산안(482.0조원) 대비 4.7조원 하회

2019~2020년 총수입 전망(NABO)



2020년 총수입 전망 비교



주: 2019~2020년은 전망
자료: NABO,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II-1. 2020년도 세입전망: 국세수입

**NABO 전망 2020년 국세수입은 288.8조원
정부 세입예산안(292.0조원) 대비 3.3조원 하회**

국세수입 추이 및 전망(NABO)



주: 2019~2020은 NABO 전망
자료: NABO,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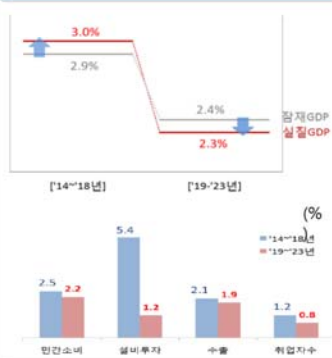
NABO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7

II-2. 세입여건

경제의 성장세 하락에 따른 세입여건 약화

경제성장 동력 약화
(인구고령화·투자 둔화)



국세수입 증가세 둔화
(세입기반 약화, 부가가치세 이양)

국세수입 증가율 전망(NABO)



경기침체기 재원조달 기능 취약
(국세수입 변동폭 확대)

경상성장률과 국세수입 증가율



자료: NABO, 「2020년 및 중기경제전망」, 「2019~202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NABO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8

[참고] 저성장기 주요국 조세정책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12~'18년)

성장률: 3.2%→2.3%, 국가채무비율: 55.8%→72.9%

국가별 경제·재정여건에 따라
조세정책 변화(세율인상/인하) 진행



자료: NABO,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버블붕괴 이후 일본('91~'09년)

성장률: 4.4%→1.3%, 국가채무비율: 63.5%→201.9%

'80~'90년대 감세정책 → '91~'09년 세수감소
'07년 이후 세율인상 → 세수증가



nabo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9

III

2019년 세법개정안 분석

III-1. 2019년 세법개정안: 특징(정부)

정부 세법개정안은 투자활성화 및 소비진작에 중점을 둔 세수감소형 개편

↳ 2019년 정부제출 세법개정안 17건(2019.10.기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및 혁신성장, 소비진작 지원

-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1년 한시 상향(대·중견·중소 1/3/7% → 2/5/10%)
- ↳ 특정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 6개월 연장
- ↳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 ↳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서민·중산층 지원 지속, 재정분권 추진

- ↳ 근로장려세제(EITC) 최소지급액 상향(3만원 → 10만원)
- ↳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6%p 인상(15% → 21%)

nabO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11

III-1. 2019년 세법개정안: 특징(국회)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은 투자 및 고용지원, 소비진작에 중점 정부안 대비 지원의 폭과 강도는 보다 적극적인 수준 요구

↳ 국회의원 발의 세법개정안 662건(2019.10.기준)

정부안 대비 지원 확대안

- ↳ 생산성향상 및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김정우·심재철·추경호의원안)
- ↳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 확대(김상훈의원안)
-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일몰연장(김두관·오제세·추경호의원안)
- ↳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폐지(김경협·김선동의의원안)
- ↳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김두관·김영춘·오제세·추경호의원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개편안

- ↳ 법인세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인하(송언석·추경호·윤영석·강효상·정갑윤의원안)
- ↳ 일반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송언석의원안)
- ↳ 무주택 자영업자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적용 확대(채이배의원안)
- ↳ 증권거래세 폐지(조경태·최운열·추경호의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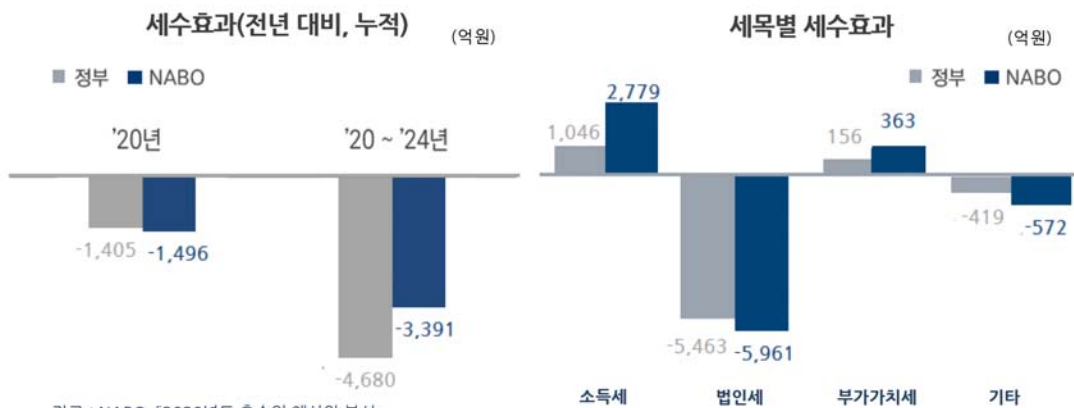
nabO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12

III-2. 2019년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NABO는 향후 5년('20~'24년) 총 3,391억원 세수감소 전망
정부 세수효과(총 4,680억원) 대비 1,289억원 낮음**

2019년 정부안 세수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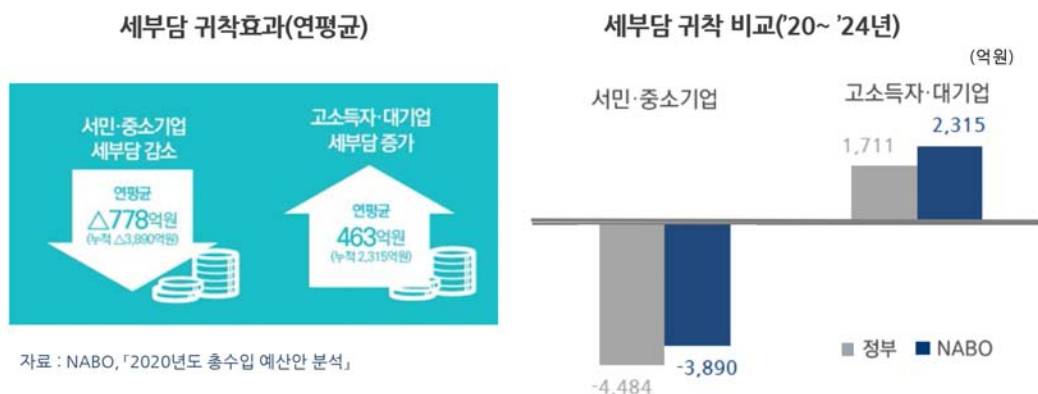
NABO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13

III-2. 2019년 세법개정안: 세부담 귀착

**NABO는 서민·중소기업 세부담은 연평균 778억원 감소
고소득자·대기업 세부담은 연평균 463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효과(NABO)



NABO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14

III-3. 세목별 분석: 소득세

근로소득공제 한도(2천만원) 신설

⇒ 전체 근로소득자의 0.11% 대상, 세입기반 확충 효과는 제한적

- (세수효과) 2020~2024년 누적 NABO 3,772억원(정부 3,210억원) 세수증가 전망
- (적용대상) 총 급여 3억 6,250만원 초과자(전체 근로소득자의 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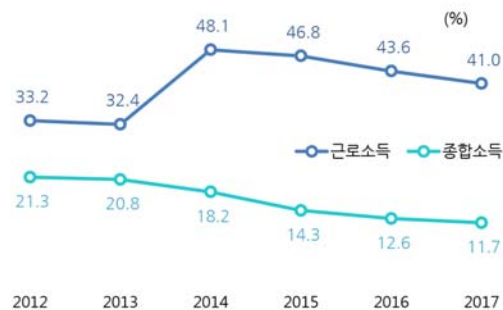
1인당 세부담 변화

(백만원)

총급여	1인당 공제액	공제한도 초과분	1인당 세부담
3.625~5억원	20.23	0.23	0.07
5~10억원	26.14	6.14	2.08
10억원 초과	58.90	38.90	14.14

자료 : NABO,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면세자 비율 추이



NABO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15

III-3. 세목별 분석: 소득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3년 연장, 추가 공제(제로페이 40%) 신설

⇒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는 가시화, 추가 공제 신설에 따른 복잡성 증가

종합소득신고자 과세표준 양성화 추이



자료 : NABO,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추가공제 연혁

시행시기	정책목표 추가	추가공제 신설
1999 도입	과세표준양성화	신용카드 사용액 10%
2012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사용액 30%
2013	대중교통 이용유도	대중교통 사용액 30%
2018	문화생활 지원	도서·공연 사용액 30%
2019	문화생활 지원	박물관·미술관 사용액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2019개정안	소상공인 부담완화	제로페이 사용액 40% (전통시장 사용액도 공유)

NA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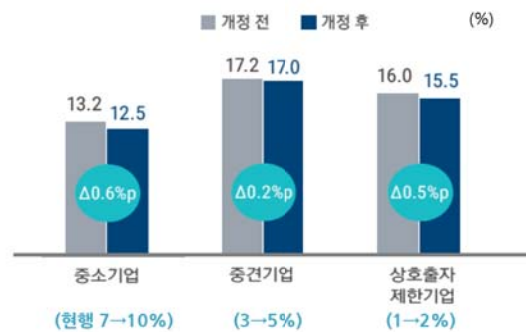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16

III-3. 세목별 분석: 법인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2020년 한시 상향 및 일몰 2년 연장

- ⇒ 공제율 상향은 수혜기업 법인세 평균 유효세율을 0.2~0.6%p 감소
- ⇒ 중소기업의 투자여력 감안시 공제율 상향 + 자금지원 수반 필요

공제율 한시 상향 효과
(법인세 평균 유효세율 감소)



자료 : NABO,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NABO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17

III-3. 세목별 분석: 법인세

특정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일몰기한 6개월(~2020.6.30) 연장

⇒ 투자의욕 고취 측면에서 가속상각과 세액공제간 연계 강화 바람직

- ※ 생산성향상시설 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1년 한시 상향된 반면,
동 시설 투자에 대한 대기업 가속상각특례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

자산취득 가속상각제도 변화

자산취득 기간	'18.7.1.~'19.7.2.	'19.7.3.~'19.12.31. (한시확대)	'20.1.1.~'20.6.30. (일몰종료)
중소·중견기업	일반사업용자산 내용연수 ±50%	일반사업용자산 내용연수 ±75%	일반사업용자산 내용연수 ±50%
대기업 (혁신성장투자 자산)	R&D설비, 신성장 기술사업화시설 내용연수 ±50%	R&D설비, 신성장 기술사업화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내용연수 ±50%	R&D설비, 신성장 기술사업화시설 (삭제) (삭제) 내용연수 ±50%

자료 : NABO,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설비투자증가율



NABO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18

III-3. 세목별 분석: 소비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6%p 인상('19년 15% → '20년 21%)

⇒ 2020~2024년 부가가치세 27.8조원(연평균 5.6조원) 이양

⇒ 국세 중 부가가치세수 비중 축소: 24.6% → 23.3%(Δ1.3%p)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이양액) 추이

(조원)



자료: NABO,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국세 중 부가가치세수 비중 변화

(%)



NABO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19

III-3. 세목별 분석: 소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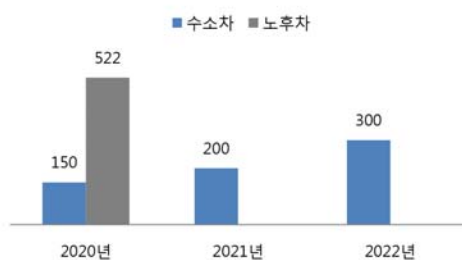
친환경차 시장기반 확대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감면 연장('20년 1월~6월)

⇒ 수소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면제 일몰 3년 연장(~'22년)

개별소비세 감면확대 세수효과(NA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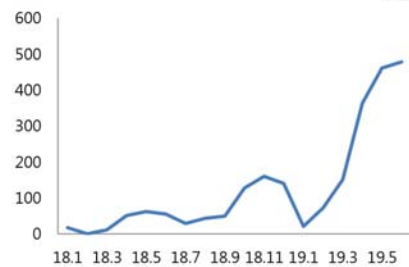
(억원)



주: 감면액 추정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합산
자료: NABO,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수소전기차 판매대수 추이

(대)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NABO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20

III-4. 조세지출 현황

조세지출 규모는 2019년 50.1조원, 전년 대비 6.1조원 증가할 전망

⇒ 국세감면율은 2019~2020년 2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전망

국세감면을 법정한도 추이



주 :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 x 100
 자료 : NABO,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NABO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21

III-4. 조세지출 정비

조세지출 정비 결과 2020년 세수는 1,262억원 감소할 전망

⇒ 세수감소는 조세지출 신설 및 확대, 일몰연장에 기인

※ 올해 조세지출 신설 및 확대 37건, 단순일몰 연장 16건(전체 정비 항목의 68.8%)

조세지출 정비 규모 추이(NABO)



주 : 2015년은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 상 정비효과임
 자료 : NABO,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NABO,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NABO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22



IV

향후 과제

IV. 향후 과제

중장기 세입기반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대비 필요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세입기반 강화 방안 모색

- └ 세입전망시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 등 향후 세입여건 위축요인 점검
- └ 중장기 조세정책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등 세입기반의 제도적 관리 강화
- └ 디지털 경제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세원 발굴 등 과세기반 확보 노력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

- └ 사회복지, 고용·투자 등 최근 확대되는 조세지출 분야와 재정지출간 연계 강화
- └ 비과세·감면 정비 강화를 통한 국세감면을 법정한도 준수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감사합니다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토론 1

김 정 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토론 2

추 경 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토론 3

채 이 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토론 4

박 형 수

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평가 1 : 세입확충 필요에 부응하지 못한 세법개정안

□ 국가재정 재원조달이라는 조세의 본래 역할에 충실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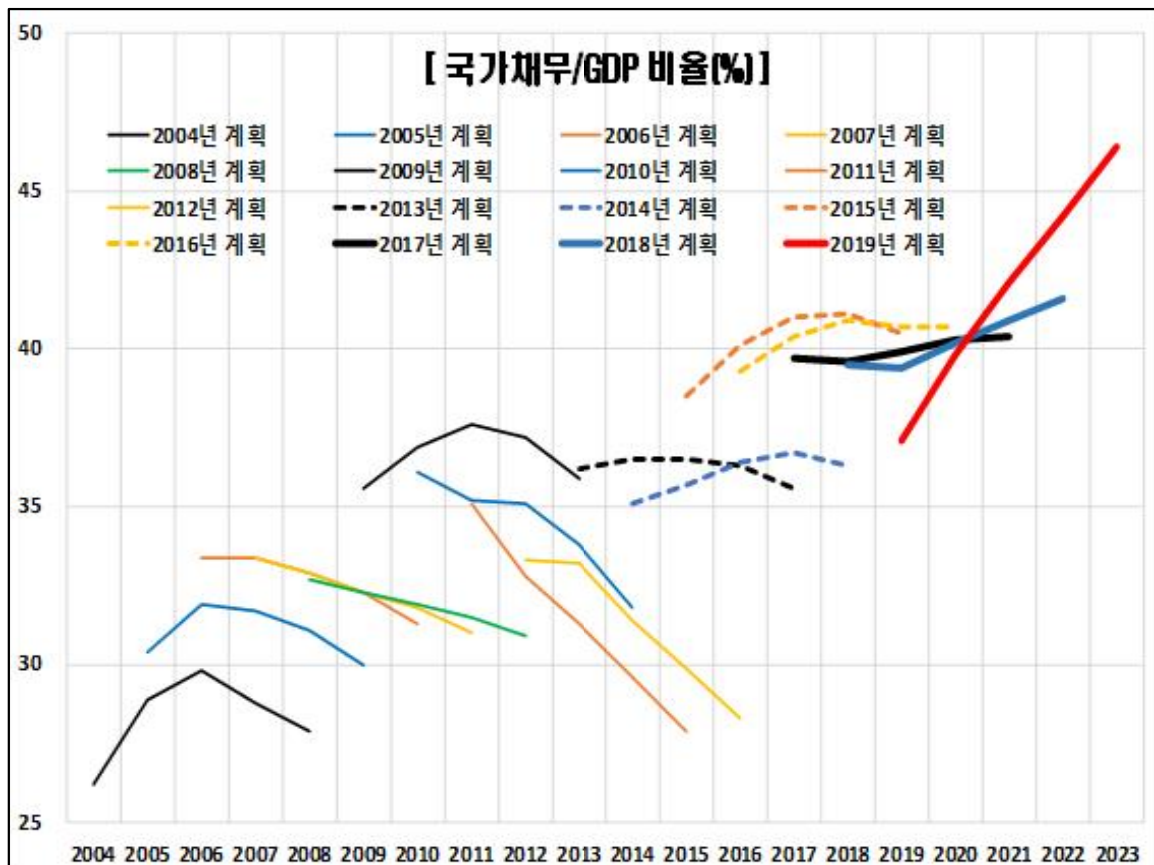
- 조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국가의 재정수입을 조달하는 것
 - 재정학·조세론 교과서는 ‘조세’란 “정부의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정한 개별적 보상을 급부하지 않고 민간부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로 정의
 - 그 다음이 공공재 공급 등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 기능
- 최근 3~4년 호조를 보이던 국세수입이 2019년부터 증가세 크게 둔화
- 내년 총지출이 금년 본예산보다 44조원 증가하는데 총수입 증가는 6조원
 - 이에 따라 내년도 관리재정수지가 72조원, GDP대비 3.6% 적자를 보이고 국가채무도 65조원이나 증가하게 됨
 - 관리재정수지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지난 20년 동안 재정적자가 GDP 대비 3%를 초과했던 연도는 외환위기 직후 2개년, 글로벌금융위기 직후 1년 등 모두 3개년뿐
-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총지출은 338조원 증가하는 반면, 총수입 증가는 166조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
 - 2004년 이후 모두 16차례 작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 중에서 이번 중기재정계획이 조세의 재원조달 기능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적어도 2023년까지 4년 연속으로 재정적자가 GDP대비 3%를 초과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질 전망

□ 증세와 국채발행의 적절한 조합을 모색하고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 조세부담률: '19년 19.6% → '23년 19.4% 전망 vs '17년 OECD 평균 25.0%
 국가채무비율: 37.2% 46.4% 83.5%
- 세법개정안 5년간 세수(누적법): '17년 +23.6 → '18년 ▲8.9 → '19년 ▲0.5조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추이

	총지출 누적증가 (A, 조원)	총수입 누적증가 (B, 조원)	지출 초과 (A-B, 조원)	재정수지/ GDP 누적 (%)	국가채무/ GDP 증가 (%p)
2004~2008년 계획	129.0	164.8	▲35.8	▲2.8	+1.7
2005~2009년 계획	137.3	165.5	▲28.2	▲5.8	▲0.4
2006~2010년 계획	152.8	178.5	▲25.7	▲6.2	▲2.1
2007~2011년 계획	181.1	209.1	▲28.0	▲5.2	▲2.4
2008~2012년 계획	171.3	218.7	▲47.4	▲3.5	▲1.8
2009~2013년 계획	48.5	177.4	▲128.9	▲12.0	0.3
2010~2014년 계획	153.9	250.3	▲96.4	▲6.0	▲4.3
2011~2015년 계획	162.2	273.3	▲111.1	▲2.5	▲7.2
2012~2016년 계획	161.2	249.5	▲88.3	▲0.7	▲5.0
2013~2017년 계획	115.0	171.1	▲56.1	▲6.0	▲0.6
2014~2018년 계획	178.8	189.0	▲10.2	▲7.9	+1.2
2015~2019년 계획	66.8	160.7	▲93.9	▲8.7	+2.0
2016~2020년 계획	92.0	179.2	▲87.2	▲7.7	+1.4
2017~2021년 계획	219.5	231.6	▲12.1	▲9.2	+0.7
2018~2022년 계획	347.8	267.8	+80.0	▲11.2	+2.1
2019~2023년 계획	338.0	165.7	+172.3	▲17.5	+9.3



평가 2 : 세제개편안이 아닌 자원배분 및 조세지출예산안에 그쳐

□ 부가가치세의 지방배분 및 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로 국세수입 감소

-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세수의 추가 지방세 이전으로 국세수입이 연간 5.1조원 감소
 -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무지출 감소분 약 2조원을 감안할 경우 중앙정부 재원은 매년 약 3조원 추가 감소
 - 세율: '10~'13년 5% → '14~'18년 11% → '19년 15% → '20년 이후 21%
 - 5년간 세수효과(누적법): '18년 ▲17.8 → '19년 ▲27.9조원
- 이외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모두 조세지출 확대에 의한 국세수입 감소
 - 일부 증세 항목도 조세지출의 축소
- 2년 연속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 초과(지방소비세율 인상효과 제외시 한도 이내)
 - 국세감면율: '18년 13.0% → '19년 14.5% → '20년 15.1%
(법정한도) (14.0%) (13.6%) (14.0%)
 - 조세지출 정비율이 38.2%(행정부 추계)로 전년(14.9%)에 비해 높아졌지만, 금년 조세지출 정비에 따른 세수효과(NABO 추계)는 2020년 ▲1,262억원
 -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공제율·감면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한 항목이 지속적으로 연장될 경우 2020~2024년 합계 4.3조원의 세수 감소 전망

2019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항목

정책 수단	증세 항목	감세 항목
세율 조정 등	-	•지방소비세율 인상 ▲5.1조원
조세지출 조정	•근로소득공제 정비 +640억원 •임원 퇴직소득 과세강화 +360억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1년 한시)▲5,320억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 ▲500억원 •사적연금 세제지원 확대 ▲440억원

□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제외하고 가장 큰 세수 감소를 초래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확대**는 심층평가에서 축소를 권고했던 제도

- 동 제도는 2020년 감면액이 1.2조원 규모로 16번째로 큰 조세지출 항목
- 조세재정연구원의 2017년 심층평가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조건부 일몰연장을 권고
 - 동 제도가 기업투자를 증대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실증분석에서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발견
 - 그러나 정책이 목표로 하는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지는 실증분석에서 잘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 다른 세액공제에 비해 소수의 제조업 대기업에 수혜가 집중되며, 최근 이러한 형평성 문제가 더 심각해 지고 있음
- 제안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았음
 - 다른 주요 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와 유사하게 중소/중견/일반 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7%/5%/3%에서 6%/3%/1% 또는 6%/3%/0%로 인하
 - 개별 기업별로 세액공제 한도를 설정하여 소수 기업의 수혜 집중을 완화
 - 세액공제 대상 장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생산성향상시설을 일일이 세법에 열거하는 방식 자체를 개선할 필요
-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17년 정부세법개정을 통해 7%/3%/1%로 인하
- 2019년 심층평가에서도 조건부 일몰연장을 건의하며 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항목을 세분류가 아닌 중분류 수준까지만 규정하도록 제안
 - 또 동 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동 제도와 기타 제도의 혜택수준을 조정할 필요
- 그러나 금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비록 1년간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2차례의 심층평가 결과와는 반대로 공제율을 10%/5%/2%로 확대
 - 공제대상에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 및 물류산업 첨단설비 추가

□ 조세지출 규모가 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심층평가에서 축소나 폐지가 권고되었음에도 공제율 조정없이 적용기한만 3년 연장

- 동 제도는 2020년 감면액이 2.3조원 규모로 6번째로 큰 조세지출 항목
- 조세재정연구원의 2018년 심층평가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동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출구전략 모색을 권고
 - 신용카드 사용이 이미 보편화되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2016년 기준 88%로 근로소득자(95%)와의 차이가 많이 감소하여 사실상 한계에 도달
 - * 2010년 기준 62% vs 85%
 -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액의 11.2%가 전체 근로소득자의 3.7%에 불과한 총급여 1억원 초과 근로소득자에 집중되는 형평성 문제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대중교통 이용 촉진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 근로소득자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동 제도의 개편방안으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상위 3개 항목은 다음과 같았음
 - 제도의 단순화: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조항 폐지
 - 소득계층 간 과세형평성 제고: 고소득층 공제한도 축소 및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통해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
 - 지불수단 간 공제율 격차 확대: ① 직불카드 공제율 유지 및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 ② 직불카드 공제율 유지,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 및 공제율 격차 확대, ③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 그러나 금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공제율 등의 변경없이 적용기한만 3년 연장
 - 또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40% 공제율을 적용하고,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 포함

□ 국세청 통계자료 및 과세정보 공유 확대,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등은 평가할 만함

-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은 보다 면밀한 정책효과 분석이 필요

대안 제시

□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

-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재추진
 - 2016~2017년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통해 재정적자(3%)·국가채무(45%) 한도 설정 등 추진했었음
 -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개혁을 추진하도록 함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도 공공기금으로 전환시켜 국가재정에 포함시켜야
- PAYGO 원칙을 법제화하여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
 - 미국사례 : 재정적자 억제를 위해 1990~2002년 시행 및 2010년 재도입
 - 재정지출 증가/감세 초래 법안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법안(다른 부분의 지출 삭감 또는 증세)을 의무화
 - 현재도 법안 발의시 비용추계서, 재원조달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국제적인 조세정책의 큰 흐름에 따라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 마련

- 국회예산정책처 제안처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장기 세입확대 실행계획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거나, 김성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처럼 2013년 도입되었지만 이미 유명무실화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내실화할 필요
- 증세 대상을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
 - 지난 10년간 조세지출 축소, 세율인상 등이 고소득층, 대기업, 자산가에 집중되었으나, 이는 증세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경제왜곡, 조세회피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크고 지속적인 증세를 어렵게 함
 - (중전) 고소득층, 대기업, 자산가에 대한 조세지출 축소 → 세율인상
(향후) 중산층, 중견기업을 포함해 조세지출 축소 → 세율인상

- 연평균 0.2%p를 크게 초과하지 않는 등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세 추진
 - 1972~2016년 기간 중 조세부담률 증가 규모는 연평균 0.16%p
 - 국민의 정부 0.23%p, 참여정부 0.37%p, MB정부 ▲0.20%p, 박근혜정부 0.18%p, 문재인정부 2년 0.90%p
- 증세가 경제활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OECD국가에 비해 세수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소득세와 소비관련 조세부담을 주로 늘리되,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은 다소 인하할 필요
 - 소득세: 지속가능한 증세를 위해 증세대상을 현재보다 넓힐 필요(예: 중산층 이상 대상의 근로소득공제 등 조세감면 축소를 추진해 세수증대, 소득세의 누진구조 강화, 면세자 축소의 3가지 정책목적을 동시에 달성)
 - * 2011년 이후 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하락한 반면, 1억원 초과(상위 2.5%)는 2~4%p 상승
 - * 종합소득자도 과표 8천만원 이하는 실효세율이 하락했으나 2~5억원은 2%p, 5억원 초과는 4%p 상승
 - 법인세: 기업규모에 따른 법인세 부담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과표구간 수 축소, 대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 및 조세지원 강화
 - * 2009년 이후 조세감면 축소, 최고세율 인상으로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기업의 실효세율은 하락한 반면 500억원 초과 기업은 1~2%p 상승
 - 소비세: 환경, 술, 담배, 도박, 유흥 등 유해행위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해 나가면서, 세수비중, 세율 등이 OECD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 상속·증여세: 부의 대물림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가업승계, 사전증여 등 일자리 창출 및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 감세 추진
 - 부동산 관련 세금: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되 일부 계층의 세부담이 단기간에 급등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완만한 증세정책 추진
- 국세감면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남발되지 않도록 조세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성과관리의 실효성 강화
 - 특히 국회예산정책처 제안처럼 복지, 고용, 투자 등 최근 확대되는 조세지출 분야와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

□ 보다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지출효율성 제고로 가능한 국민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고 국가재정을 운용

○ 이제까지와 달리 보다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전략적 지출검토(strategic spending review) 제도를 도입할 필요

- 특히 여러 부처에 흩어져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각종 유사·중복 예산사업들을 통·폐합하고 정책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보다 과감하게 기존 예산사업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 복지 이외 재정규모는 OECD국가 평균 수준이므로 결국 복지지출의 증가속도 제어만이 조세부담의 지나친 증가를 막는 유일한 길이므로 복지정책의 가성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
- 본인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조세와 복지를 통한 지니계수 개선효과가 작은 것은 소득세와 복지지출 규모가 작은 것 이외에 정책수단의 구성과 개별 정책수단의 효과성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뒤처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재분배 정책의 효율성 분석"(예산정책연구 2019년 5월)

"소득재분배 정책효과의 비교분석: 정책수단 및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재정학연구 2019년 8월)

○ 이와 같은 재정총량에 대한 관리 이외에 최근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개별 예산사업에 대한 관리가 느슨해졌기 때문에 개별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예산심사, 사업관리, 사후평가 등 지출관리를 보다 엄격히 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회계연도 지출결산 분석에서 정책목표와 상반되게 예산이 지출되거나 사업이 중복된 사례, 성과가 매우 미흡한 사례, 표면적 집행실적과 달리 실행이 미진한 사례 등이 다수 발견

○ 복지지출의 확대, 경기부양 등 재정책확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규율있는 확대가 아니면 재정책확대의 성과가 담보되지 않음

- 최근 국가재정이 악화될 정도로 재정투입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사회통합 등 재정정책의 성과는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토론 5

박 명 호

홍익대학교 교수

오늘의 제 토론에서는 세법개정 여건, 기본방향, 세법개정 상세내용이라는 2019년 세법 개정안의 목차에 맞추어서 제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조세정책의 환경을 나타내는 세법개정 여건은 경제여건과 재정여건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우선, 경제여건을 보면, 세법개정안을 만들 때 우려했던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 확대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이 쉽지 않다고 하였다. 4사분기에 경제가 전기대비 0.97%를 성장해야 겨우 2%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통계가 공표되는 1953년 이후의 역사를 볼 때, 경제성장률이 1%대 이하를 기록한 적은 대내외적 경제적 충격이 왔던 1956년(0.7%), 1980년(-1.7%), 1998년(-5.5%), 2009년(0.8%) 등 네 번밖에 존재하지 않는다.¹⁾ 이러한 사실은 올해의 거시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며, 내년 경제성장률도 정부가 목표한 2.6%를 하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재정여건은 급격한 복지지출 확대로 재정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2019년 8월까지의 관리재정수지 누적적자가 49.5조원에 달한다. 관리재정수지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적자가 GDP 대비 3%보다 큰 해는 경제위기를 경험했던 1998년(4.7%)과 2009년(3.8%) 두 차례뿐이다. 그러나 정부의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치가 2020년 3.6%, 2021~2023년 3.9%로 3%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상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행 재정기조가 유지될 때, 중장기적으로 재정여건이 매우 빠르게 악화될 것임을 강하게 나타낸다.

이상과 같이 조세정책을 둘러싼 환경을 거시경제 여건과 재정여건을 통해 살펴본바, 조세정책의 운신의 폭이 매우 좁음을 알 수 있다. 경기 상황을 볼 때는 과감한 감세조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낙관적 경제전망 아래서조차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고, 과세기반도 경상성장률 하락 기조로 크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증세를 통한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도 요구된다. 2020년에 1,405억원 정도의 감세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 금번 세법개정안은 이런 상충된 조세정책 환경 아래에서 나온 교육지책의 결과로 판단된다.

다음,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으로 ①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②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③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을 제

1) 2000년 이전은 2010년 기준년의 경제성장률이다.

시하였다. 문재인정부의 지난 2년 간 세법개정안을 보면, 소득분배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금번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과 혁신성장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기본방향의 전환은 작금의 악화된 거시경제 여건을 반영한 결과로 본다.

이런 정책기조의 변화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에서도 관찰된다. 작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5년 연평균 지출증가가 가장 빠른 분야가 보건·복지·고용(18~22 연평균 10.3%)분야였다. 반면 올해의 경우에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19~23 연평균 12.4%)와 R&D(19~23 연평균 10.8%) 분야의 지출 증가율이 보건·복지·고용(19~23 연평균 9.2%) 분야의 지출 증가율보다 높게 계획되었다.

다만, 현재 제시된 세법개정의 내용이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이라는 중점 기본 방향에 충분할 정도로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예를 들면, 2019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연구개발 및 투자촉진 분야의 조세지출의 전체 조세지출 대비 비중은 2018년 10.9%에서 2020년 7.9%로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혁신성장의 핵심 주체인 대기업에 대한 유인을 축소할 결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대기업에게 허용된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 공제율의 경우 2018년 3%였으나, 2019년 1% 및 2020년 2%로 하향되었다. 성장동력이 크게 위축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투자여력과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세제 유인을 제공하는 등 과감한 투자 촉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6월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였다. 동 발표에서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 투자에 대한 세제 등 과감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제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기업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한시적(1년이 아닌 2~3년 정도) 세제지원 방안을 신중하지만 조속히 확정·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투자유인을 통하여 기업이윤이 확대된다면 경기부양 효과뿐만 아니라 세수측면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세법개정 상세내용 등에 관한 의견이다. 눈에 띄는 개정안은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²⁾과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개정안이다. 이 두 주제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할 정도로 논란이 많은 주제이다. 이 두 가지 사안 모두 기업의 경영권을 후속 세대로 넘길 때 경영권 유지와 관련되어 있다. ‘부의 되물림’은 공정성 차원에서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2) 최대주주 할증율이 경우 중소기업은 없어지고 대기업은 소유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할증율이 30%에서 20%로 낮아졌다.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일부 완화라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상속세 차원에서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본다.

한편 주류의 과세체계 개편도 주목할 만하다. 주정 외 주류 중 맥주·탁주는 종가세에서 물가연동형 종량세로 과세체계가 개정될 예정이다. 다만, 소주와 약주·청주·과실주는 여전히 종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나머지 주류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번 세법개정안은 세입기반을 넓히고 비효율적 비과세감면을 줄이려는 노력 측면에서 보면 아쉬운 면이 있다.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이 2017년 귀속 40.8%에 달하여 약 700만명이 넘고 있음에도 이를 줄이는 조치는 없고 단지 고소득자들의 근로소득공제 한도만 설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소득공제도 폐지하겠다는 운만 띄운 뒤 연장됐다. 한편,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상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중 면세 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20년 2.4조원)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20년 2.3조원)는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그 규모를 줄일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회의록

○ 사회

처장님의 개회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일동박수)

○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처장 이종후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오늘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이춘석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김광림, 또 장병완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님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립니다. 또한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원윤희 교수님과 토론에 참석해 주시는 김정우 의원님, 추경호 의원님, 채이배 의원님, 그리고 박형수 교수님, 박명호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발제를 맡아주시는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님,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대외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인구고령화와 투자둔화로 인해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재정 측면에서는 국세수입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재정지출은 수입보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 및 재정여건 하에서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면서도,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는 조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구축을 세제개

편의 핵심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비 진작 및 투자활성화, 경제·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도 경기진작, 고용 지원, 서민 생활안정지원 강화 등 정부안에 비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다수의 의원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개진과 함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앞으로의 국회에서의 세법개정안 심사에 큰 방향을 제시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이춘석 기획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동박수)

이어서 이춘석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을 모셔서 축하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와 함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일동박수)

○ 이춘석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딱 졸리는 시간이라.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과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논해 보는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예산

처 이종후 처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 재정연구포럼의 대표를 맡고 계신 김광림 의원님과 장병완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발제를 맡아 주신 임재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님과 정문중 실장님, 그리고 사회를 맡아 주신 원윤희 교수님과 토론자로 함께 해 주신 기재위 간사를 맡고 계시는 김정우 의원님과 추경호 의원님, 그리고 채이배 의원님, 박형수 교수님, 박명호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상황이 안팎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 등 우려가 글로벌 경기를 압박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체감 경기에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겹쳐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잠재성장률 저하가 우려되면서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세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이번 토론회도 이러한 필요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들려주실지 기대가 큼니다.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적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 그리고 ‘조세체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기재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

원님들께서 우리 조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과 대안들을 담아서 지금 우리 기재위에서 세법개정안이 계류 중이고 곧 구체적인 심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내에 최고로 꼽히는 세법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한자리에 어렵게 모인 만큼, 국가재정운용을 위한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해 주시고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여러분들께서 들려주신 제언과 고언을 여러 위원들과 함께 깊이 숙고하고 세법개정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정책을 수립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 축하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동박수)

다음으로 오늘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신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의 김광림 공동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일동박수)

○ 김광림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

2004년도 우리 국회에 예산정책처가 개청이 되고 16년간 계속해서 우리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명실상부한 가장 권위 있고 참여하는 정성이 높은 토론회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20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장병완 의원님과 저를 비롯해서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원님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같이 이렇게 이 토론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하기 전에 우리 경제재정포럼이 국내의 경제일간지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경제가 참 어렵다’하는 답이 80%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다’라고 하는 답이 45%, 10명 중에 4~5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하게 될 주52시간, 중소기업도 적용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니까 반대한다는 게 2/3가 되었습니다. ‘소득격차, 빈부격차가 줄어들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비율도 2/3입니다. 그럼 도대체 일자리를 어디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역시 ‘민간에서 해야 된다’, ‘노동개혁을 해야 된다’, ‘규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순서로 나오고 ‘공공부분에서 늘려야 된다’ 하는 것은 7%밖에 나오지 않는 결과가 있었고요. 총체적으로 ‘현재 경제 정책들이 점수로 매기면 몇 점 정도가 되느냐’ 하는 점수에는 ‘60점 이하’가 2/3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신문에도 보니까 다른 여론조사에는 ‘C학점 이하’가 ‘F학점’ 포함해서 70%가 넘는 걸로 되었을 만큼 우리 경제가 엄중한 시기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것을 인식을 하셨는지 최근에 경제부총리께서 계속해서 “경제 괜찮다, 대외 여건이 나빠서 그렇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으로 어려운 것을 인정을 하시면서 경제 참 제대로 살리자면 구조개혁에 나서야 된다, 특

히 노동개혁에 나서야 된다 하고 부총리도 같은 목소리를 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제기구 IMF라든지 OECD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재정 확대, 확장적 재정 정책을 권유하고 있는데 권유할 때 마다 꼭 따라다니는 게 뭐냐 하면 “재정건전성 챙겨가면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과 함께. 그런데 우리 지금 정부에서는 워낙 어려운 면도 있지만 재정이라 하면 세출예산 증대시키는 쪽만 보이는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IMF나 OECD가 권고하고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예를 들었던 독일이나 네덜란드, 이 두 나라를 예로 드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세출 지출이 아니고 재정이라 하면 세출도 있지만 세입, 세금도 있기 때문에 감세 조치, 조세지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했고 독일도 세율 낮추고 있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로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임재현 국장이 발제를 해 주시고 정문종 실장님께서 또 발제를 해 주시는데 논의된 결과를 곧 시작할 내년도 예산, 특히 세입, 세금 쪽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이춘석 위원장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세법을 손으로 만져갈 추경호 의원님, 김정우 의원님, 채이배 의원님 함께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좌장을 맡아주실 원윤희 교수님, 전 조세연구원의 원장인 박형수 조세연구원 원장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국회부의장을 지내신 심재철 부의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고 기

확재정위에서 세법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연구결과가 감세가 될지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서 민간에 일자리가 좀 늘어나는 방향으로 그런 경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동박수)

이어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 장병완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님으로부터 간단하게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동박수)

○ 장병완(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

저는 지난 월요일,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토론회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니까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요즘 지역에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면 참 요즘 과거처럼 먹지로 세무조사 하는데 참 세금을 잘도 걷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혹시 옛날에 의원님이 국세청에 슈퍼컴퓨터를 너무 성능이 좋은 것을 사주어서 이게 그런 것 아니냐”고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모르는 소득이나 이런 것도 국세청 슈퍼컴퓨터는 다 족집게처럼 잡아내더라

고요.

어쨌든 포용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출의 증대와 세입의 감소를 조세감면을 해야 한다는, 지출 확대 또는 부담 감소의 측면과 또 이렇게 이제 사실 과거 경제의 위기 때 아니면 1%대의 성장을 했던 적이 없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모든 지표들이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좀 기업들의 의욕을 북돋고 실제 경기의 투자와 그리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세금을 좀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그 2개의 양립하기 어려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과제는 어떤 솔로몬의 지혜는 없겠지만 우리 정기국회 내에서, 국회에서 사실은 녹여내야 할 과제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석해 주신 발제자 분들, 토론자 분들이 이러한 어려운 과제를 우리가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그런 실마리를 제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 사회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동박수)

앞서 말씀해 주신대로 이 회의장에 심재철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앞으로 모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 심재철(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다른 모든 법 중에서 세법이야말로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내야 될 것인지, 이런 상황에 대해. 전체 나라 거시적

으로 지금 우리 경제상황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세법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돈을 걷어 내야 되는데, 저야 이제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한 푼이라도 어떻게 하면 줄여야 되느냐. 그래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부담률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저희들은 심의를 철저히 하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는데 이번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봤습니다마는 세법개정안이 인상폭이 적고 최소화되고, 아니 오히려 세율을 낮추는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동박수)

○ 사회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제2019년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난 7월에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한 200여개가 되는 광범위한 개편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 정부개편안도 있고 또 한편 여러 의원님들이 제출하신 세법개정안들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여러 논의 과정에서 이런 많은 개편안들이 집중적인 토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그리고 광범위한 의견, 여론수렴을 통해서 보

다 나은 세법으로 탄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그러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긴 정기국회의 기간 동안 이 세법개정안이 서로 토론되는 그런 과정에 오늘 처음 출발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토론회에서 많은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발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이 토론회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발제자는 각각 20분씩 발제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토론자들은 각각 10분씩 이렇게 토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재현 총괄정책관님께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 임재현(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기재부 임재현 국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기국회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과정하고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세정책 여건을 보면 지금 조세 부담률은 13년 이후에 상승하기 시작해서 전년도에 20%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다시 상당기간 19%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이 추세가 상승추세이긴 하지만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세목별 비중을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3대 세목으로써 종래에는 법인세의 비중이 부가세보다 적었었는데 최근에 법인세수가 늘어나면서 18년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부가세수 비중을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시 부가세가 내년 이후에는 더 커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20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으로 예산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이 예산은 2019년의 경우는 294.8조기 때문에 2.8조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지방소비세 5.1조가 내년에 추가로 지방에 이 양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19년 예산보다는 소폭 증가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축에 의해서 세법개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외부수요의 의견을 수렴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제출한 중장기 기조정책방향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일부 반영했고 그리고 정부가 작년, 금년에 제출한 각종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정책을 뒷받침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기본방향입니다. 기본방향 세 가지 축을 기초로 해서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는데 첫 번째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입니다. 세 번째는 '조세제도의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입니다.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인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중에서 투자활력 제고 부분입니다. 현재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공제율을 현재 대기업이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인데 이것을 1년간 한시적으로 각각 2, 5, 10%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향상 투자세액 공제대상하고 안전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을 확대했고 그리고 감가투자자산에서 감가상각을 가속상각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가속상각 하는 제도를 일부 한시적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대상

자산을 대기업 같은 경우는 종래는 혁신성장 투자자산에서 여기에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 절약시설을 추가했고요. 한도 같은 경우도 기준내용연수의 50%까지 감가상각을 조기에 할 수 있던 것을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75%로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많이 논의가 됐던 가업상속지원세제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사후관리기간을 단축했고 업종·고용·자산의 유지의무를 완화했습니다.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하고 업종변경범위를 소분류 내 변경 가능하던 것을 중분류 내 변경을 허용하도록 했고요. 자산유지의무를 완화해서 예외가 되는 자산에서 예외 폭을 불가피한 처분으로 확대했습니다. 고용유지의무가 있는데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100%로 했고요. 이번에 신설되는 게 불성실기업인, 그러니까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탈세나 회계부정으로 형사 처벌 받은 경우에는 공제를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속세 연부연납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적용대상을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 이상 중견기업에서 모든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를 했고 또 적용 요건이 있는데 피상속인 요건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최대주주거나 재직해야 되는데 이걸 5년으로 단축했고 상속인도 2년 이상 가업 종사하는 요건이 있었는데 이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많이 언론보도가 됐었는데요, 맥주·탁주에 대해서 기존 종가세 과세체계를 종량세 과세체계로 전환하고 생맥주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2년간 한시 경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

면 제도가 있습니다.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을 해 주는데 이 적용 업종에 서비스업이 일부 있습니다. 이 사업 적용대상에 서비스업종의 범위를 대폭 확대를 했고요.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라고 그래서 일단 증여를 받으면 5억원까지는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0% 세율로 과세이월을 했다가 나중에 상속이 일어났을 때 과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종을 확대하고 의무기간, 사후관리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1년 이내 창업에서 2년 이내 창업으로 바꾸고 3년 이내 자금사용에서 4년 이내 자금사용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장이전 양도소득 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공장을 이전하거나 아니면 공익사업을 위해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에 대해서 분납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보통 2년 거치 2년 분할납부 아니면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인데 전부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로 변경했습니다.

소비·수출 활성화의 부분입니다. 지금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가 3,000불로 되어 있는데 이걸 5,000불로 확대를 했고요.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에서 즉시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즉시환급 한도를 건당 30만원에서 50만원, 총구매액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를 했고 외국인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미용·성형 의료 이용을 받으면 나갈 때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1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하기 위해서 원자재를 수입할 때 부가세를 납부유예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 납부유예 제도 적용요건

을 완화하고 신청기한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화물에 대해서 국가가 검사를 하는 경우에 종래에는 해당 기업들이 검사비용을 부담했었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고요. 다만 검사했더니 수출입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외했습니다.

다음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인데요. 현재 신성장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 세액공제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각각 5, 7, 10%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기술에 혁신성장 관련 기술을 추가했고요. 이월기간 같은 경우는 일부 산업의 경우에는 투자하고 나서 수익이 날 때까지 기간이 5년보다 장기간 소요되는 업종이 있는 걸 감안해서 이걸 10년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연구비의 경우에는 국내기관 위탁연구비만 R&D로 인정했었는데 이걸 내국법인이 지배하는 해외 자회사라든가 외국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경우에도 R&D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위탁 R&D라는 게 인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부위탁 R&D에 대해서도 서비스의 경우에도 과학기술과 융합된 분야에 대해서는 적용하도록 했고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및 시설투자 지원을 합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이 사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내국법인, 이것도 소·부·장 대책 관련입니

다. 내국법인의 소재기업 공동출자할 때 세액 공제 신설을 했는데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출자를 하게 되면 출자금액 5% 세액공제를 하고요. 또 이게 국내 기술이 미흡한 해외 소·부·장 전문기업이 인수하게 되면 그 인수금액을 5,000억 까지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벤처캐피탈이 소·부·장 관련 글로벌 전문기업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걸 산자부에서 글로벌 탑 스페셜 티라고 하는데 소재부품기업법 개정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정이 완료되면 여기에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을 비과세 하는 안을 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축인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부분입니다.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일몰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투자세액공제율을 기존의 중견 1~2%, 중소 3%에서 중견 5%, 중소 10%까지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경단녀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경단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 여성은 3년간 소득세 70% 감면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 세액공제를 해 주는데요.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종래에 임신, 출산, 육아에서 결혼과 자녀교육을 추가했고 경력단절 기간도 3년에서 10년까지였던 것을 15년으로 확대했고 동일기업에 취업하게 된 요건을 동종업종 취업으로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도 「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서관이나 사적지 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도 감면 적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 점증구간 EITC 같은 경우에는 모형을 보시면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 해가지고 사다리꼴로 됩니다. 점증구간은 소득이 올라가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게 근로장려금 최소지급금액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저희가 높였습니다.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가지고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고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납입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400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고요. 퇴직연금을 보다 장기간에 걸쳐서 수령하는 것을 지원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연퇴직소득세의 70% 부과하던 것을 60%만 부과하는 것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 세액공제 제도가 있는데요. 공제율 및 공제한도 특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걸 2년 연장하고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도 1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 6%p 상향해서 부가가치세의 15%에서 21%로 상향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약 5.1조원의 지방재원 이전이 발생합니다.

다음 공정경제·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에 요점을 뒀습니다. 현재 지정기부금단체가 각 주무부처가 추천하게 돼 있는 것을 추천 및 사후관리

검증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였고 대신 국세청과 주무관청간의 정보공유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을 지금은 무조건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최초 지정받는 경우에는 일단 3년을 해보고 3년 후에 재심사를 해서 다시 6년을 지정하는 걸로 변경을 했고요. 부실한 기부금단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기부금 사용 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회계 감리 제도라고 해서 영리법인에게 적용하는 제도를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지주회사가 현물출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현물출자해서 지주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현물출자 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과세이연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을 하는데 이것을 지주회사 현물출자 시점부터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 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와 관련해서 현재 주택 면적의, 주택정착면적의 5배까지를 주택으로 봐주는데 이것을 수도권인 경우에는 주택 면적의 3배까지로 해서 특례를 축소했고요. 9억원 초과 고가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서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하고 장특공제를 적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축인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 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세무조사권 남용방지 제도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현재 국세청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영세사업자 대상으로 할 때는 세무조사에 입회하도록 했고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세무조사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한 조사공무원을 교체할 수 있도록 교체 요구하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조세심판 및 심사청구 관련해가지고 현재 조사심판원 회의에 심판부회의가 있고 합동회의가 있습니다. 현재는 원장이 합동회의 부의하도록 한 것을 원장과 상임심판관으로 구성된 심판관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했고요. 국세청 심사청구에 따라서 지금 국세심사위원회에서 하는데 현재는 국세심사위원회가 자문기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세청장에서 국세심사위원회로 변경을 해서 결정권한을 심사위원회로 이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할 때 경정청구, 그러니까 감액 신청하는 경정청구하고 증액 신청하는 수정신고 제도를 기한 후 신고에도 적용하도록 해서 납세 편의를 제고하려고 하고요. 기한 후 신고하면 현재는 무신고 가산세를 50%, 20% 감면만 있는데 중간에 30%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조세제도 합리화 부분입니다. 기업들의 요구도 많고 많이 논의가 되는 부분인데요.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는 할증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는 기업규모와 지분율에 따라서 지분율이 50% 넘는 경우에는 30%가 할증이 되는데 개정안은 지분율의 적용을 따지지 않고 기업규모에 따라서 중소기업은 할증률이 없고 일반기업만 20% 할증하는 걸로 단일화하면서 단순화했습니다. 국세청 통계자료 공개를 확대합니다. 연구기관에서 연구 목적으로 국세청 내 시설에 가서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현재 국세청 과세정

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세 등을 부과하는 지자체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공정위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필요로 하는 공정위 등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기업들이 애로사항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업무용승용차 운영하면서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운행기록부 작성을 해야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간 1,000만원입니다. 이걸 1,5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해서 특히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고요. 국제거래 자료제출 이행력 제고와 관련해서 국제거래와 관련된 자료제출의무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하고도 시정을 안 하면 과세당국이 시정요구를 해가지고 그래도 불응하면 과태료를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국제거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전가격 추정과세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다음은 세입기반 확충입니다. 현재 근로소득세 계산할 때 근로소득에 따라서 근로소득공제라고 해가지고 총급여에 따라서 일괄 공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근로소득공제에 ... 한도를 2,000만원으로 해서 지금보다 고액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가 2,000만원에서 제한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입니다. 임원이 퇴직금을 받게 되면 일정 한도를 넘어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큰 근로소득세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퇴직소득으로 간주되는 부분을 줄여서 근로소득세 과세가 늘어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미등록 특허 사

용대가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현행법상으로도 과세가 지금은 된다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계속 '과세가 안 된다'라는 판결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세가 되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고요. 사실과 다른 거짓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세법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세수효과하고 세부담 귀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수효과 산정하는 방법이 통상 순액법과 누적법이라고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순액법이라는 것은 매년 전년도 기준에서 세법개정으로 세수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냐를 판단하는 게 순액법이고요. 누적법은 금년에 세법개정을 발표하면 금년 기준을 향후 몇 년간 매년 세수효과를 누적해서 계산하는 방법인데 누적법의 경우에도 이걸 그러면 향후 5년 갈 거냐, 10년 할 거냐에 대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5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순액법으로 따지면 향후 5년간 세수가 한 40억 플러스가 나고 20년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 드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한시 확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20년에 1,400억의 세수감소가 생기고요. 누적법으로 하면 약 4,700억의 세수감소가 있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근로소득공제 정비에서 한 640억 플러스가 되고 임원 퇴직소득 과세 강화에 360억 세수 증가 요인이 있고요. 감소 요인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 사적연금 세제지원 확대입니다.

다음은 세부담 귀착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안

으로 해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1,000억원이 감소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부담은 1,400억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사회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임재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종 실장님 발표하시겠습니다.

○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감사합니다. NABO 추계세제분석실장 정문종입니다. 기재부 임재현 국장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임 국장님이 제대로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입장에서 보는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 발표순서는 중기 경제여건, 2020년도 세입전망, 19년 세법개정안 분석, 그리고 과제 순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경제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IMF나 OECD에서도 불과 5개월 사이에 세계경제 전망률을 0.3%p나 내렸습니다. 또 우리 경제에도 안 좋죠. 보시는 것처럼 저희 NABO의 경제분석국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잠재성장률이 계속 5.0, 4.2, 3.2, 2.9, 2.4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경제는 추세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이제는 경제가 2% 성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가 자연스럽게 가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 NABO에서는 2019년은 성장률이 2.0, 내년에는 2.3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잠재성장률 2.4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올리거나

심지어는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경제를 부스팅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마 그런 점에서도 정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출을 늘리는 재정 편성을 해온 걸로 보입니다. 사실 그런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NABO가 전망을 바탕으로 정부가 내년에 짜온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을 해서 향후 10년간 전망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 전망인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의 모든 숫자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는 한 전부 NABO에서 만든 숫자들입니다. 총지출 증가율이 향후 10년간 4.5%가 될 겁니다. 총수입은 3.8이 되는데요. 문제는 국세수입 증가율이 3.5로써 총지출 대비 약 1.0%p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습니다만 총지출과 총수입의 간격을 약 한 5~60조 정도를 벌려놓고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국세수입만 놓고 보더라도 내년에는 감소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이양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국세수입 증가가 높지 않다라는 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일 수도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아시는 것처럼 올해부터 적자 전환되었습니다. 사실 뭐 통합재정수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보장성기금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관리재정수지이고 관리재정수지는 점점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왜 중요하냐면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국채로 메워져야 되는 수치입니다. 물론 전부

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개 관리재정수지의 한 80~90% 사이를 국채로 메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채는 당연히 증가할 겁니다. 뭐 꼭 어느 정도 증가하는가에 대해서는 물론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망으로는 하여튼 2028년이 되면 국채는 약 GDP 대비 56%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국채의 절대적인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 것도 있고 실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베이스가 되는 GDP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채는 2028년에 56.7, 저희 추가적인 전망에 따르면 2031년 정도 되면 국채가 60% 될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 에서 권고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세입전망을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총수입이 올해, 내년 좀 떨어집니다. 또 저희는 정부보다도 총수입에서 약 한 4조원 정도 적게 보고 있습니다. 국세수입에서 한 3조원, 국세외수입에서 1조원 정도 덜 보고 있습니다. 뭐 이진 있을 수 있는 흐름이기도 합니다만 문제는 좀 긴 시기로 보게 되면 외환위기와 경제위기 때에는 주춤합니다. 세입이 주춤하고 그다음에 2012~13년 때는 세제개편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법인세를 낮췄었고 또 부가세 이양도 생기고 해서 축 처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처진 흐름들은 바로 반등했습니다. 바로 반등했는데 올해와 내년은 마이너스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내년에는 5조, 올해 한 4조 정도의 부가세 이양이 있어서 약 10조 정도의 부가세 이양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전 3년간의 국세증가율에 비해서는 아주 떨어지고 있고 이 추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방점을 두는 부분은 그 부분이죠. 내년은 뭐 경제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어떤 것인가가 우리의 총 관심사입니다. 보실까요?

구조적인 요인들이 많습니다. 다 아시는 요인들입니다. 인구구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도 사실은 최근에 기업투자가 활발한 편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국세수입 증가율을 보시면 안정적인 국세세원인 소득세나 부가세는 어느 정도 증가를 합니다만 경기에 민감한 법인세, 뭐 소득세 내에서도 물론 종합소득세가 있겠습니다만 경기에 민감한 법인세 부분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다. 아시다시피 작년, 올해는 떨어졌습니다. 올해와 내년은 떨어집니다. 앞으로도 증가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죠. 또 문제는 세 번째 보시는 것처럼 경제가 한 3~5% 정도 성장할 때에는 국세수입이 증가가 좋습니다. 당연히 법인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경제가 2%대로 떨어지게 되면 성장률이 2%로 떨어지면 법인세가 크게 떨어지게 되고 증가율이 매우 작게 되고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국세수입의 증가율이 때로는 마이너스를 실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기침체에 우리의 조세구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우리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다른 예를 보면 저성장기에는 이렇습니다. 왼쪽 시트는 왼쪽 종축은 국가채무증가율이고요, 횡축은 경제성장하락률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6년간의 성장률을 보면 세계적으로 한 1%p 떨어졌고요, 국가채

무는 평균적으로 한 17%p 정도 올라갔습니다. 보시면 A그룹에 있는 나라, 즉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성장이 많이 감소하고 국채가 많이 증가한 나라들은 세금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가 법인세, 두 번째가 소득세인데요. 올렸습니다. 반면에 C, D 그룹에 있는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국채증가율도 작고 세금도 줄이는 편이었습니다. 칠레, 독일 이런 데는 그렇고요. 약간의 법인세 올린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세금을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나라들, 대개 이게 기축통화 국가들인데요. 그런 나라들은 법인세율은 낮추고 소득세율은 높이는 쪽으로 작동을 해왔습니다. 우리한테도 앞으로 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오른쪽은 일본입니다. 많은 분이 얘기하고 계시지만 일본도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감세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된 후, 소위 잃어버린 20년이 회복된 후에는 증세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국채가 증가하는 문제는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일본은 충분히 국채를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인 통화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지금도 여차하면 양적확대 정책을 쓰고 있죠. 과연 우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 세법개정안을 보겠습니다.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세수감소형입니다. 특별히 주요 세목에 대한 세율조정은 없습니다. 몇 개의 조세지출을 통해서 투자활성화를 의도하고 있고 서민·중산층 지원이나 또 지방세 이양 같은 부분으로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의 특징이 이어질 겁니다. 반면 국회에서는 조금

더 넓은 폭, 또 때로는 좀 더 깊게 의원님들께서 안을 제기하고 제칩니다. 정부와 놓고 볼 때에는 생산성향상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공제율을 올리자는 말씀을 주셨고요. 가속상각특례 기간도 조금 늘리자. 예컨대 정부는 6개월이지만 의원 안에서는 5년, 정규직 전환 세액 공제도 일몰연장은 정부는 1년이지만 국회는 3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정부는 3년 올렸는데 국회는 함구화, 이런 식으로 논의가 있고요. 또 지방소비세에 관련해서는 매년 늘려서 50%까지 넘기자, 이런 안도 있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실현성 있는지는 다른 문제지만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를 제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서는 법인세율인하, 또 시설투자를 생산성향상 투자만이 아니라 모든 시설투자에 대해서 하자, 송언석 의원님이 그런 주장하셨고요. 무주택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자만이 아니라 무주택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월세세액공제를 하자, 증권거래세 폐지하자, 이런 논의들이 국회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마 12월 2일까지 세법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수효과입니다. 저희는 사실 정부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향후 5년간 4,680억 갖고 왔고 저희는 3,391억 정도 감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특이한 것은 세목별 효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득세의 경우 저희는 조금 더, 정부보다 조금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뒤에 보겠습니다만 근로소득공제 한도의 효과가 저희는 조금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등 그런 데에 견인합니다.

그다음 세부담 귀착입니다. 역시 정부와 큰 차이 없습니다. 서민·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좀 줄고 고소득·대기업의 세부담은 좀 늘니다. 제가 조금 대기업 쪽의 세액이 좀 느는 것으로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세목별로 보겠습니다. 큰 흐름입니다. 이번 소득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공제 한도를 신설한 겁니다.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 되는 소득공제 받으려면 소득이 한 3억 6,250만원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두 분만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 저희 계산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세의 0.11%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기반 확충 효과는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부보다 많습니다. 정부는 3,200억, 저희는 3,7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도 도입의 의미는 되게 큼니다. 앞으로 근로 소득공제 한도는 조금 더 낮추고, 낮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조금 더 낼 수 있게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나 세정에서도 이런 방향, 어느 정도 세일링이나 미니멈을 두른 세정 방향들을 여전히 많이 도입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근로소득세 관련해서 문제되고 있는 면세자 비율은 여전히, 뭐 면세점이 변한 것은 아니니까요. 문제가 있어서 또 한편 저희는 면세자 비율을 낮추려는 노력들이 전체 근로소득자들이 세금을 조금 조금씩 더 내는 효과를 갖고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

것이 조금 더 앞으로 진지하게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소득세의 중요한 측면이 신용카드입니다. 매년 논란이 되죠. 뭐 1년 연장하고 2년 연장하고 올해 3년 연장했습니다만 사실은 뭐 왼쪽 시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위 과표 양성화 부분은 이미 거의 달성됐습니다. 달성됐는데 아무래도 모든 분이 다,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걸 또 이렇게 뺏다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연장이 되면서 자꾸 추가 공제가 들어와서 내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건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법인세입니다.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투자세액공제율을 1년 동안 올렸습니다. 특히 올해 특징적인 사실은 오른쪽 하단에 보는 것처럼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대개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안올리거나 줄여왔는데 이번에는 올렸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후년에는 다시 원년 수준 돌아가긴 합니다만 다시 후년까지 연장하는 정책을 이번에 취하셨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어떤 경제에 인젝션을 하자라는 이런 생각이신 것 같고 저희도 동의합니다. 이것 때문에 유효세율은 한 0.2 내지 0.6%p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가속상각특례, 가속상각특례는 미리 지금 세금을 덜 내면 나중에 더 내게 되니까 세금의 더 긴 시간 텀을 보고는 변화가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덜 내게 되는 거

조. 덜 내게 하는 것을 6개월 연장을 했는데 특이한 것은 대개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와 가속 상각특례를 같은 기간으로 갖는데 이번에는 좀 하나는 1년 또는 2년 가고 하나는 6개월 갔다 라는 이런 것이 있는데 아마 이것까지 뭐 1년, 2년 하게 되면 세금이 너무 준다는 부담이 있지 않나 싶은데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세입니다. 부가세가 같죠. 이것은 이전 된 거죠. 지방분권 대책에 의해서 2019년에도 이양했고 2020년에도 이양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흐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지방이전으로 가는 재원의 베이스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아주 많은 입법안 행위들이 있습니다.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정하는 것들이 많이 오게 되고 아마 그게 행안위라든지 교육위라든지 기재위라든지 그래서 논의가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소비세에서 이번에 노후차에 대한 지원을, 노후차 교체할 때 지원을 연장했 고요. 수소차에 대해서도 3년 동안 연장을 했습니다. 신산업이라든지 환경적인 고려를 본다면 당연한 정책방향으로 보이고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강조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타 주류종량세 도입이라든가 가업상속공제 완화라든가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지출인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조세지출은 올해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주요 세목의 세율변화 없이 조세지출을 통해서 경기대책, 경기진작, 경기진작이란 표현이 애매하고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고 있는데 어쨌든 강제규

정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규정이 최근 3년간의 평균 조세지출 규모에다가 0.5% 정도만 허용하고 있는데 올해도 내년에도 그걸 넘어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년에는 올해, 내년의 영향으로 조금 베이스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여전히 이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6년부터 본다면 조세지출이 그걸 넘어서는 해는 두 해였는데 그 두 해가 바로 또 그다음에는 한도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해인데 세해, 네 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하튼 정책적 필요는 인정하지만 조세지출의 규모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죠. 잘 모르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실제 정비 내용을 보시면 2015년, 16년까지는 조세지출 정비에서 세금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특히 현 정부 들어서는 세수 조세지출이 늘면서 세수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어서 조금 주의해야 되고 우리도 조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영역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렵습니다. 사실 지출은 필요합니다. 지출 요인은 되게 많습니다. 가장 큰 것이 인구요인이고 또 고령화 요인이고 또 국민의 사회복지 수준에 대한 요구이고 또 재분배에 의한 격차해소요인도 있고 해서 늘 수밖에 없습니다. 늘 수밖에 없고 늘 건 또 타당한 일이고 그게 또 국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서포트 하는 건데 서포트 할 내용들이 지금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는 저성장 구조에 조금은 익숙해지고 저성장 구조 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것인가를 새로운 문제를 갖게 됩

니다. 저희는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항상 고성장에서만 있고 세금의 영역은 충분히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성장이고 세금이 지출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영역에 와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단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깊게 깊게 숙고해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입여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 경제에 대한 냉정한 관찰을 바탕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중장기 세수관리 계획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지만 유효성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확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역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죠. 디지털세 등등 많이들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높이 해야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자율도 낮으니까 구태여 국가채무 늘리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담을 갖느냐, 그리고 60%라는 게 경제 이자율이 높을 때에 국가채무 레블인데 지금 이자율이 1~2%밖에 안 되는데 그 레블이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우리 채무가 늘면 우리 이자율이 지금의 수준이 될지 잘 모릅니다. 이자율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관리는 필요합니다.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앞으로 몇 년 내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채무관리 꼭 필요하고요.

저는 세입기반의 측면을 말씀드렸지만 또 세출은 저의 소관을 넘어서긴 하지만 세출 측면

에서도 지출 효율성 강화하고 숨겨진 지출 같은 것 관리 잘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사회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두 분 발제자께서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임재현 국장님께서서는 혁신성장 포용, 공정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제출했던 세법개정안을 설명을 해 주셨고요. 정문종 실장님께서서는 주로 저성장 시대의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향후 어떻게 적절한 세입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장병완 위원님께서 농담처럼 국세청에 너무 좋은 슈퍼컴을 사줘서 요새 이렇게 과세기반이 너무 노출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3~4년 동안 국세증가율이 굉장히 높았던 게 2015년 이후에 국세청이 도입했던 NTIS, New Tax Information System의 도입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래프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2015년, 16년 이후에 굉장히 과세기반 확충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아마 베이스를 형성해서 향후에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올해, 내년에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먼저 해 주실까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의원님 10분 부탁드립니다.

○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의원입니다. 이번 문

재인 정부의 2019년도 세법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기본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그리고 두 번째는 포용성 강화, 그리고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이런 방향을 잡으셨고요. 특히 이번에는 민간의 투자촉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저로서는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가속화시키겠다는 그러한 세제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 세 가지 분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분야는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했던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아냈습니다.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든지 그다음에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가속상각을 6개월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주세와 관련해서 그동안 30여년 넘게 한 쪽 방향으로만 돼 있던 주세를 개편안을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해서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또한 가업상속지원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전 정부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개편에 실패했었는데 이번에 또 실효성 제고방안을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해서 우리 국회에서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논의를 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 정부안 중에 국내 소비와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를 상향하는

것, 지금 3,000불인데 5,000불로 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승용차 구입할 때 개별 소비세를 한시적이지만 감면하겠다는 것인지 외국관광객의 성형이라든지 숙박요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연장하는 것, 이것도 역시 소비와 수출을 위해서 적정한 방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신성장기술, 원천기술에 대해서 R&D 비용을 세액공제 한다는 것, 그리고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에 대한 특례를 준다는 것은 진짜 어느 정부보다도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정부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일부에서 법인세 인하와 관련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법인세의 명목세율, 명목 최고세율은 25%인데 경제 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 비슷한 수준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 99.8%가 적용받는 법인세율 명목세율은 20% 이하기 때문에 미국의 21% 보다 낮은 것이다. 또한 실효세율 측면에서 보면 타국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한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하지 않고도 기업의 고용이라든지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2017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효과를 보고 그 이후에 논의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침략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

고요, 심지어는 어떤 국민들은 말씀 들어보면 약국에서 약을 사실 때도 약에 들어간 성분이 일제산인지 아닌지 체크하시고 산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불매운동도 100일이 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제침략, 경제전쟁에서 수출·수입규모의 변동사항을 보면 우리가 지금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지만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소재·부품·장비에 대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그중에 이번에 핵심기술을 가진 인력이라든지 기업의 세제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이번에 마련돼서 저희도 참 기쁘게 생각하고 이것을 국회에서 답을 내서 우리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세입기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조세부담률이 18년도에만 20%를 찍고 야까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향후에는 20% 수준보다 좀 낮아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세부담률, 적정 조세부담률이 어느 정도를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 이후에는, 올해는 좀 그런 것이 아직 논의가 안 된 것 같은데 내년도 이후에는 그것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된다. 특히 중장기 조세부담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것을 검토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조세 부분의 형평성 부분입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밝힌지만 초고소득자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 세부담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까지의 통합소득 변화를 보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에 상위 0.1% 구간의 통합소득은, 전체 통합소득은 28.3%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상위 0.1%에 해당하는 부자들은 소득증가율이 43%나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상위 0.1% 부자들의 세부담은 오히려 0.3%p 낮아진 것입니다. 그러한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그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안이 제출됐고 그리고 세출예산안과 달리 세입예산 쪽은 또 의원 입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법인세 인하 부분이라든지 다른 여러 의원 입법안, 정당별로 또 많이 내주셨는데 이것을 국회기획재정위 조세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여야 간사 간, 그리고 여야 의원님들과 중지를 모아서 마련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 사회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 추경호(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전체 매크로한 흐름으로 보면 참 지금 암울한 상황입니다. 경제가 굉장

히 좋지 않고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각종 거시지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낮아진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따라서 역시 세수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난해 세수하고 금년 세수가 경제는 어떻게든지 움직였는데 세수가 큰 차이 없고 이 세수가 또 내년에도 큰 차이 없다, 이걸 뭐 세금이 안 걷힌다는 거죠. 세금이 안 걷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져 있다 이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쪽에 걱정되는 것은 또 정부의 지출의욕은 대단해서 지출은 계속 늘리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길로 가면 남는 것은 세금폭탄 아니면 빚더미에 앉는 재정파탄 이 두 길이다. 여기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재정확대, 조세지출 감면, 특히 재정지출 확대에서는 민간의 활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성장을 받치지 못하니까 일시적으로라도 재정지출을 대폭 늘려야 되겠다 이러한데 그게 지금 2년째였고 내년에 3년째 초수퍼 팽창 예산을 지금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간이 성장을 못 받쳐주니까 재정이 좀 나셔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한두 번 해 보고 안 되면 ‘아, 문제의 원인이 다른 데 있구나, 일시적으로 재정지출로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살려야 되겠구나, 민간 활력을 높여야 되겠구나.’ 이 처방으로 가야 되는데 역시 안 되니까 재정지출을 엄청나게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세금은 안 걷히는데 재정지출은 늘리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빚내서 늘리는 도리뿐이다.

그래서 처방을 민간기업이, 그리고 민간 부분이 얼마나 활력 있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느냐, 그런 돈 안 쓰고 해야 되는 정책을 구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거 안 된다고 자꾸 나라 곳간 쳐다보는 이 잘못된 처방이 문제를 자꾸 더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간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경제정책을 바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경제가 좋지 않은데 세금은 자꾸 더 걷힌다. 매크로하게 보면 지금은 지난해나 금년이나 세수부담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현장에서는 이 조세부담을 굉장히 강하게 느낀다. 이것은 뭐냐, 아까 슈퍼컴퓨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서울의 설사 큰 변동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실질적인 세부담을 많이 느낀다. 즉 세원 포착이 옛날보다 훨씬 용이해진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사람이 과거에 10을 내던 사람이 지금 서울변동이 없어도 12를 낸다. 뭐 대단히 소득변화가 없어도 포착이 더 되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도 역시 조세저항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옛날에 소위 말하는 명목세율이 이 수준이 과연 그대로, 있는 대로 내었으면 이게 걱정했겠느냐 이것에 관한 문제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세원 투명해지고 여기에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있으면 여기에 세율을 조정해 주는 게 따라가야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조세부담을 느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현장에서는 전부 어려운 사람들이 다 세금 때문에 죽겠다, 경기 어려운데도 죽겠는데 세금 더 뜯어가니까 우리 더 못살게 한다, 이 불만이 굉장히 커지는 거다. 이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당국자들은. 이것을 하나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를 좀 살리고 회복을 시켜야 세수기반이 확충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기업에 활력을 뒷받침해 주고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낮춰주는 쪽으로 역시 조세정책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포용성이란 명분하에 시장왜곡을 시키는 이런 조세체계는 좀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선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결의가 많이 다르겠습니까마는 정말 기이한 세율 인상이었습니다, 2년 전에. 전 세계가 법인세를 다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가 법인세를 올린 정부가 대한민국에서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부터 김대중 정부를 거쳐서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 다 법인세를 내려왔는데 유독 문재인 정부만 법인세를 유일하게 올렸고 그것도 전 세계 선진국, 잘 나가는 국가들도 다 법인세 내려서 경기 뒷받침하고 이렇게 한단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이 법인세는 조세의 국제경쟁력입니다. 다른 나라하고 모든 조건이 똑같은 때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그거 경쟁력이 받쳐지겠습니까? 거기에 또 모레주머니 같은, 쌀가마니 같은 걸 하나 등에 더 지금 쥐어주는 그런 꼴이다. 이 부분에 관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 물론 일부 학자에 따라서 법인세의 효과가 있다, 없다 그러는데 그것 이때까지 뭐 법인세 물론 인하 효과가 있다는 학계의 연구결과가 많습니까마는 다 차치하고 효과가 없으면 다른 나라에서 뭐하려고 법인세를 내립니까, 그거? 왜 미국은 내리고 왜 영국은 내리

고 왜 일본은 내리고 왜 멀쩡한 국가들이 왜 내리냐고요, 그것을. 다른 것 우리가 어려운 논리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 그런 면에서 지금 법인세 올린 이 부분이라도 빨리 시정시켜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 안 그러면 자꾸 기업들이 도망간다. 이것은 자세한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투자 활력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세액공제투자, 세액공제 해야 되는데 원론상으로 보면 효과가 있다, 없다 뭐 여러 견해가 있겠습니까마는 어쨌거나 기업이 일시적으로 투자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당에서 지난해에도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3%, 5%, 10% 이렇게 냈는데 여당·정부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서 관철을 못 시켰는데 때늦게 1년 뒤에 지금 금년에 정부에서 여당하고 합의를 해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저희들은 ‘각각 3%, 5%, 10% 내려라’ 하고 지난해에도 주장을 했고 금년에도 세법을 냈습니까마는 정부·여당에서 2%, 5%, 10%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즉 대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차별화된 시각으로 본다. 투자하는데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지금 투자를 견인을 해야 될 이런 시점에. 그래서 지난해에 논의하다가 ‘대기업도 3% 확대를 해 주라.’ 그러니까 ‘대기업은 그렇게 못 해 주겠다, 2%만 하자.’ 이 논쟁을 하다가 안 된 겁니다. 아직까지 세법이 계류돼 있는데 정부·여당에서도 좀 더 기왕에 투자를 유도하려고 그러면 전향적인 자세로 여기에도 우리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제안한 대로 3%, 5%, 10% 이 안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고. 기왕에 가속상각제도도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을 냈는데 지난해 제가 즉시상각제도 이것을, 일시상각제도죠. 미국에서 도입해서 투자활성화 유도한 겁니다. ‘한 해에 기왕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전부 상각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가속상각에 그치지 말고 일시상각, 즉시상각제도로 전향적으로 도입을 해 주라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부분입니다. 기업승계 관련해서 우리는 상속세, 증여세 이 기업승계하고 관련된 부분을 여전히 부의 대물림이라는 이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가고 있다. 지금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상속세가 없거나 대부분 상속세 10%, 많아야 20% 거둡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45%, 50%를 최고세율로 갖고 있고 여기에 할증세율까지 포함하면 최고 65%입니다. 세계 초유의 상속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중견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해봐야 곧 내가 죽으면 반 이상을 국가로 헌납을 해야 되는데 내가 투자해서 뭐 하느냐, 빨리 이 사고방식을 없애라. 그래서 정부가 지금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시늉한다는 식으로 언론의 그런 평가입니다. 상속증여세 관련해서, 기업승계 관련해서 일부 감면제도를 갖고 왔습니다만 그 정도로는 안 된다, 훨씬 더 파격적인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 여기에는 관련 법안들이 많이 있으니 사후관리 요건, 그리고 상속공개대상 확대 등에 관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최대주식, 그러니까 대주주의 상속증세 할증에 관한 제도는 세계 유례가 없는 제도기 때문에

이런 것은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소·부·장, 소위 말해서 일본 경쟁력 운운하면서 소재·부품·장비 이번에 대폭적으로 예산도 오고 여기에 세제의 감면 예산이 왔는데 오늘자 모 일간지에 ‘소·부·장 예산탄, 좀비기업 5년 새 4배나 늘어났다.’ 이렇게 한꺼번에 늘어나면 돈 빼먹는 데가 많습니다. R&D 예산 못 빼먹고 중소기업 지원에서 못 빼먹으면 바보다. 요새 정부 또 지원 뭐 일자리안정자금 등등 그것 못 빼먹으면 전부 바보라는 이런 비아냥이 있듯이 이런 부분에 관한 점점이 또 철저히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여당에서도 저희하고 같이 법을 냈습니다마는 자본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세 제도는 이제 폐지할 때가 됐다, 이 부분을 양도세로 갈아타는 순차적인 계획이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여러 세제 논리로 보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정착이 됐다. 이것은 신용카드 제도가 세원을 투명하게 한다, 이 정책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근로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세제로 정착했기 때문에 이것은 3년 연장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제로페이, 탄생하지 말아야 될, 시장교란을 시키고 민간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시장에 불필요하게 정부가 개입하는 제로페이, 여기에 또 세제혜택을 준다.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시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협에 전산용역 부가세 면제기간이

일몰이 도래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여기에 세금이 부과되면 결국은 농협의 부담이고 이것은 결국은 농민들한테 부담이 돌아간다. 지금 WTO 개도국 협상지위를 없앤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이 부담이 어려워지는 부분에 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가세 면제기간의 일몰연장도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미래 먹거리인 영상 콘텐츠, 특히 오락 이런 부분에 관한, 지금 오락이 한류에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여전히 문화, 다큐, 지극히 제한적인 부분에 관해서 영상 콘텐츠 지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OTT, 넷플릭스 이런 데 대해서 콘텐츠 지원하는 이런 산업을 우리가 굉장히 육성을 해야 되는데 벌써 좀 늦었다. 이런 부분에 관한 세제지원이 전폭적으로 일어나서 이 시장을 열고 그래서 일자리 늘려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세부담을 줄여주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나라살림 사는 데 있어 특히 재정지출의 구조조정, 복지 포폴리즘은 경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추경호 의원님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다음은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올해 세법안을 평가하기에 앞서 과거를 잠깐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7년에 기억나는 것은

‘핀셋증세’라고 해서 법인세, 소득세를 아주 고소득 구간만 새로 만들거나 또 새로 올린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2018년에는 기억나는 것이 근로장려 세제, 근로장려금을 2.6조원 지급해서 저소득층 지원을 했다는 것인데요. 기억해 보시면 이 근로장려 세제를 확대했던 이유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이라는 대책을 정부가 내놨지만 그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근로장려 세제를 확대해야 된다고 저희 당에서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굉장히 큰 규모의 저소득층 지원책으로서 작년에 마련이 됐죠. 그 외에 작년에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됐지만 굉장히 미미하게 0.9조원 증액하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올해도 제가 보니까 뭘 평가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난 3년간의 세법개정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단기적인 처방에 급급한 것이라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정책의 방향성을 크게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굉장히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복지가 강화되면서 당연히 거기 따르는 세수 확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세출은 늘어나지만 세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굉장히 무책임한 것인데 만일 이것을 지금 현 정부도 알면서 이런다면 정말 그것은 비겁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정말 무능한 여당이다, 정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만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법개정안을 평가한다라고 하지만 전혀 지금 확대재정정책에 대응하는 세수확대안은 없다.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경제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투자세액공제와 고용세액공제 등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계사로서 수년간 기업들을 감사하거나 기업들과 접촉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세액공제를 해 준다고 투자하지 않을 투자를 하거나 뽑지 않을 사람을 뽑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나서서 세액공제나 또는 예산 지원을 한다고 해서 기업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새로 하거나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 저는 과연 이런 예산정책과 조세정책이 과연 기업을 움직이게 하는 유인장치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금 한국의 저성장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재벌개혁, 규제개혁,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그다음에 노동개혁, 그다음에 지금 우리 논의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 재정개혁, 공공부분 개혁, 사회안전망 확충, 이런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난 2년 넘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단기적인 처방인 맨날 재정책대와 이런 세제 지원을 자꾸 내보내는 것은 저는 더 시장을 왜곡시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진짜 확

실하게 사회안전망 확충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 분야에, 기업에다가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대상자에게 지원을 해 주고 그 대상자에게 지원을 해서 우리가 세수가 더 필요하다면 저는 아까 정문종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세자 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 그런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조세 개세주의를 위한 솔직하고 용감한 정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지난 3년간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서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추경호 의원님께서 박근혜 정부,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법인세를 올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다. 기업에 돈이 쌓이고 돈이 돌지 않는 것을 돈을 돌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소득증대 세제 3대 패키지를 발표 했었고요. 그중에 지금도 유효하게 작동하는 것이 기업소득 환류세제,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미환류소득 세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2016년도에 533억에서 지금 2018년에 719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증세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또 어떤 큰 증세를 했느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담배세를 인상을 하면서 엄청난 세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소득세를 또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완전히 패러다임을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세수가 더 확보됐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그걸 세금폭탄이라고 비난을 하는 걸 보면서 과연 복지국가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과연 저런 것을 비판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여전히 민주당은 재정은 늘리면서 세수는 줄이는 겉과 속이 다른 정책을 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앞서 추경호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도 다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세수확대를 위한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결국 이렇게 간다면 결국 우리는 수많은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입니다. 당장 내년에 60조원의 적자부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인데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세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지출구조조정 그렇게 하자고 말로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60조원의 5년 동안, 자기 임기 5년 동안 60조원의 재정을 지출구조조정으로 확보를 하겠다고 하면서 2018년 예산의 10조원, 19년 예산의 12조원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리스트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줄였던 예산 올해 다시 올리거나 재작년에 줄였던 예산 작년에 올렸습니다. 말로만 지출구조조정이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확대재정정책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확대재정정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당연히 1차적으로 낭비예산 줄이는 지출구조조정부터 해야죠. 그거하고 안 되면 세금 늘려야죠, 올려야죠. 그리고 안 되면 빚을 쳐서라도 국채발행 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갔습니다. 빚부터 먼저 지자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책임하고요, 비겁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별에 대해서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하고 최대주주 할증과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진짜 거꾸로 가는 재벌개혁입니다. 이 정부가 공정경제, 재벌개혁 하겠다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왔고 기대를 했지만 거꾸로 가는 거죠. 기업이 잘되게 하는 것과 세금을 내야 되는 상속인, 피상속인, 기업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상속세를 많이 낸다고 기업이 망하냐. 저는 기업하고 기업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걸 하나로 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부터 기본적으로 우리가 탈피해야 되고 가업상속의 제도는, 그리고 상속세는 저는 세금으로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소유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기업이 더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이냐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없이, 진짜 가업상속 공제 5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고작 18명인데 이 18명에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이런 가업상속공제제도 완화하는 것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연부연납 제도 같은 것 완화하면 충분한 효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을 없앤다고 하는데 경제개혁연대라는 단체에서 14년부터 18년까지 최대주주가 변경한 M&A나 여러 가지 지분변화를 보면서 지분 10% 이상의 주식양도거래 143건을 조사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49%에서 68%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속세법이 가지고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 30%가 시장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된 경영권 프리미엄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프리미엄을 더 올려야 됩니다. 할증을 더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우려와 함께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좀 의미 있게 담은 개정안이라고 한다면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행정기관 간에 공유함으로써 결국은 국가정책의 전반적인 공정과세에 기반을 좀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공익법인에 대한 공익성과 투명성 확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2개 다 세수에 대한 효과는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공정과세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저는 문재인 정부가 확대재정정책에 걸맞은 세수확대정책까지 용감하게 남은 기간 동안에는 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동박수)

○ 사회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세 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같은 공통점도 있으시고 또 많이 다른 의견도 개진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 **박형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박형수입니다. 제 토론문은 토론회 자료집 63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저는 과세형평성 제고나 혁신성장 지원과 같은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 좀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만 말씀을 드리보면요. 금년도 세법개정안은 내년도와 향후 5년 동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재정확장에 필요한 세입확충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 첫 번째 평가입니다. 조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국가의 재정수입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이 금년보다 44조원 증가합니다. 그런데 총수입 증가는 6조원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총지출이 338조원 증가하는 반면에 총수입 증가는 166조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제가 64페이지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04년 이후 모두 16번이나 작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 중에서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조세의 재원조달 기능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년도에 GDP 대비 3.6%의 재정적자, 그리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3.9%의 적자 규모가 더 커집니다. 또 그래프에서 보듯이 국가채무는 금년 말 GDP 대비 37.2%에서 2023년 말에는 46.4%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세법개정으로 인해 국세수입이 0.5조원 감소한다고 합니다.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8.9조원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 규모 자체는 조금 작아지기는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원을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정말 2년 연속으로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세법개정안을 2년 연속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당장 증세하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잠시 국가채무를 늘려서 우리가 시간을 좀 벌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지출이 향후 5년 동안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증세계획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국가채무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고 국가채무만 늘릴 것이 아니라 OECD 평균보다 낮은 조세부담률도 있기 때문에 조세부담률도 같이 늘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IMF나 OECD 같은 국제기구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재정지출 확대를 주문을 하고 있다는 언론 뉴스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들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동시에 재정건전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한국의 낮은 조세부담률을 감안해서 조세부담률 자체를 같이 올려라,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쪽 이야기만 듣고 있고 다른 한 쪽에 대해서는 지금 귀를 닫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두 번째 평가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세제개편안이 아니라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재원배분, 그리고 조세지출예산안과 같다는 느낌입니다. 지방소비세율이 금년에 11%에서 15%로 인상되었는데요. 내년에 또 21%로 인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부가가치세 세수 5.1조원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게 됩니다. 내국세 감소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한 2조원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감안해 본다고 한다면 중앙정부의 재원 자체가 매년 3조원씩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발표에도 이러한 중앙정부 재원의 항구적인 감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습시다만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이 모두 국세수입 감소를 초래하는 조세지출의 확대입니다. 물론 그게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늘리고 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물론 1년 한시적이긴 합니다마는 연간 5,320억원의 세수 감소를 초래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도 500억의 세수 감소, 그다음 사적연금의 세제지원 확대도 440억원의 매년 세수 감소가, 아, 매년은 아니군요. 5년간 440억원의 세수감소를 초래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아까 발표에도 나왔습시다마는 2년 연속으로 국세감면율이 국가재정법에서 재정건전화의 장치의 하나로서 지금 국세감면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정 한도를 설정해 놓고 있는데 이 법정 한도를 2년 연속으로 초과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큰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심층평가에서 그동안에 축소를 권고했던 조세지출 제도입니다. 2017년에 제가 있었던 조세재정연구원의 심층평가에서 여러 가지 조세지출 제도의 문제점들을 감안해 볼 때 조건부로 일몰연장을 권고를 했습니다. 정부가 이를 수용을 해서 중견기업과 일반기업에 대해서 공제율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세법개정안에서는 비록 1년간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습시다마는 공제율을 다시 높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조세지출 규모가 굉장히 큰

신용카드 등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심층평가에서 정말 축소나 폐지가 권고되었던 조세지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세법 개정안에서는 공제율 조정조차도 없이 적용기간만 지금 3년 연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조달하지 못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책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선 2016년에 추진하다가 중단된 재정건전화법을 다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제정을 다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매년 정부수입과 지출을 딱 맞추는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중기적으로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강제화하는 정말 마지막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장치인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건전화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또 재정지출의 증가나 감세를 초래하는 법안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 다른 부분의 지출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증세를 한다든지 하는 그 법안을 동시에 제출하게 만드는 그걸 의무화하는 PAYGO 원칙을 법제화해서 엄격하게 지켜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조세정책의 큰 흐름에 따라서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을 조속히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장기 세입확대에 대한 실행계획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김성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13년도 도입되었습니다만 이미 유명무실해

진 중장기조세정책운용계획을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세의 대상과 방법으로는 최근 10년 동안에는 정말 고소득층, 초대기업, 자산가에 대한 조세지출 혜택을 축소를 하다가 2017년 말에는 이들에 대해서 세율인상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소수의 납세자에 집중되는 증세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증세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왜곡, 조세회피 등등의 부작용이 굉장히 큼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세를 하는 데 오히려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의 증세정책은 증세정책의 대상 자체를 중산층, 중견기업까지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 이들 대상으로 해서 조세지출 축소를 하고 점차 세율인상까지를 우리가 도모를 해야 되겠습니다. 증세 속도를 말씀드리자면 조세부담률 아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조세부담률 증가 속도를 연평균 한 0.2%p 정도, 이 정도를 크게 초과하지 않는.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세를 추진을 할 것을 저는 제안을 합니다. 또 증세의 내용으로는 증세정책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세수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소득세, 또 소비관련 조세부담은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듯이 법인세나 상속증여세 부담 같은 부분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다소 인하할 필요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 토론문을 참조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여러분들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지출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국민들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국가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야 합

니다. 최근 국가재정이 굉장히 악화될 정도로 굉장히 재정을 투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 또 국민의 삶의 질, 사회 통합 등등 이러한 조세재정정책의 성과가 가지 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과가 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확대, 그리고 경기부양을 위해서 감세나 아니면 조세 지출의 확대, 또 재정확장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규율 있게 이러한 정책들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재정확대의 성과가 담보되지 못한다고 하는 정말 재정학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자체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사회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감사합니다. 비판과 함께 대안까지 제시를 잘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홍익대학교 박명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73페이지에 제 토론문이 나와 있는데요. 그 토론문을 보시면 제 주된 것들을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세법개정의 여건과 기본 방향, 세법개정 상세내용이라는 2019년도 세법개정안 목차를 맞추어서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세정책의 환경을 나타내는 세법개정 여건을 경제여건과 재정여건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경제여건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세법개정안을 만들 때 우려했던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 확대가 사실상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이 어렵다고 밝혔고요. 올해 10월, 11월, 12월 그 석 달 동안 안에 경제가 전기 대비 약 1% 정도 성장해야 겨우 2% 성장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통계가 공표되는 1953년 이후의 역사를 바라볼 때 경제성장률이 1% 이하를 기록한 적은 대내외적인 경제적인 충격이 왔던 1956년, 80년, 98년, 2009년 네 번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올해의 거시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고 또 내년 경제성장률도 정부가 목표한 2.6%를 하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 여건과 더불어 재정여건을 보게 되면 급격한 복지지출 확대에 인해서 재정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보다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까지의 관리재정수지 누적적자를 보게 되면 거의 50조에 달합니다. 관리재정수지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보다 더 큰 해는 경제위기를 경험했던 98년과 2009년 두 차례 뿐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2019년~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게 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치를 내년에는 3.6% 그리고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3.9%, 사실상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보

다 낮아진다 그러면 4%를 넘어갈 수 있는 재정적자, 관리재정적자가 넘어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상당히 높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상시화되고 있다는 걸 갖다가 담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재정기조가 유지될 때 중장기적으로 재정여건이 매우 빠르게 악화될 것임을 강하게 나타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세정책을 둘러싼 환경을 거시경제 여건과 재정여건을 통해서 살펴본바, 조세정책의 운신의 폭은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경기 상황을 볼 때는 과감한 감세조치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낙관적 경제전망 아래서조차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과세 기반도 경상성장률 하락 기조로 인해서 크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증세를 통해서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20년에 1,405억원 정도의 감세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세수중립적인 세법개정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충된 조세정책 환경 아래서 나온 교육지책의 결과로 판단됩니다. 좋게 표현하면 교육지책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세제당국의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 보입니다.

다음에는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두 번째가 경제·사회의 포용성 및 공정성 강화, 세 번째가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간 세법개정안을 보게 되면 주된 기본방향이 소득분배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은 경제활력과 혁신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의 전환은 작금의 악화된 거시경제 여건을 반영한 결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기조의 변화가 세법개정안의 세부내용에 충분히 담겨져 있느냐라는 걸 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연구개발 및 투자촉진 분야의 조세지출의 전체 조세지출 대비 비중은 2018년 경우에 10.9%였는데 2020년, 내년에는 7.9%로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혁신성장의 핵심 주체인 대기업에 대한 유인을 축소할 결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기업에 허용된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같은 경우 2019년에 1%에서 2020년에 한시적으로 한 해 동안만 2%로 올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올리는 것인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2018년도에는 3%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성장동력이 크게 위축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투자여력과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세제 유인을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등 과감한 투자촉진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 6월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동 발표에서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 투자에 대한 세

제 등 과감한 지원을 약속하였고요. 따라서 제 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기업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한시적인, 여기서의 한시적이란 건 1년짜리가 아니라 최소한 2~3년은 되는 세제지원 방안을 신중하지만 조속히 확정·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투자 유인을 통해서 기업이윤이 확대된다고 그러면 경기부양 효과뿐만 아니라 세수측면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법개정 상세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에 띄는 개정안은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과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이 두 주제는 상당히 민감해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었고 논쟁이 되었던 주제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 모두 기업의 경영권을 후속 세대로 넘길 때 경영권 유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부의 대물림’이라는 공정성 차원에서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세법개정안 안에서는 일부 완화라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속세 차원에서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특위의 권고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의 과세체계 개편도 주목할 만한데요. 주정 이외의 주류 중 맥주나 탁주는 종가세에서 물가연동형 종량제로 과세체계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다만 소주와 약주·청주·과실주는 여전히 종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세제당국에서는 세제의 일관성, 그리고 합리성을 위해서 나머지

주류들도 종가세에서 종량제로 전환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세법개정안은 세입기반을 넓히고 비효율적인 비과세감면을 줄이려는 노력,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이 2017년 기준으로 볼 때 10명 중 4명에 달합니다. 약 700만명이 넘고 있는데요. 이를 줄이려는 조치는 없고 단지 고소득자들의 근로소득공제 한도만 설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경기는 부양해야 하겠고 재정은 또 튼튼하게 해야 하는 세제당국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방향은 과감하게 조세지출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이 있겠지만 힘을 내서 이러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번에 운만 띄웠다가 다시 연장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든지 그리고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나 신용카드 등에 따른 세액공제, 이러한 항목들도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그 규모를 줄일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문종 실장님께서 발표 자료에는 말씀은 안 하셨는데 향후에 국가채무의 관리와 지출효율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말씀의 근거에 깔린 것은 장기전망을 해 보는 사람들이면 다 아는 미래의 재정위험 때문입니다. 현재의 추세로 가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위험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위험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의 마련

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돈 버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일을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의 60% 정도만 세금을 내고 있고 전체 인구를 보게 되면 한 1/3 정도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노인이든 어린 아이들이든 돈을 쓰는 사람이면 모두 세금을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인상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운영하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게 되면 조세정책 틀이 소득세와 법인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안 좋으면 부가세 세율도 인상하고 또 재정이 어려우면 부가세율을 또 인상하고 또 경기가 안 좋으면 부가세를 내리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세 가지 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만 사용하고 있는 절름발이 조세정책을 펴고 있다는 걸 갖다가 다시 한 번 유념해서 좀 논의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동박수)

발간일 2019년 12월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
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예산정책처, 2019

NABO STATS

재정경제통계시스템

www.nabostats.go.kr

NABOSTATS(재정경제통계시스템)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정활동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재정·경제 통계,
국회의 예·결산 심사연혁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통계정보시스템입니다.



재정·경제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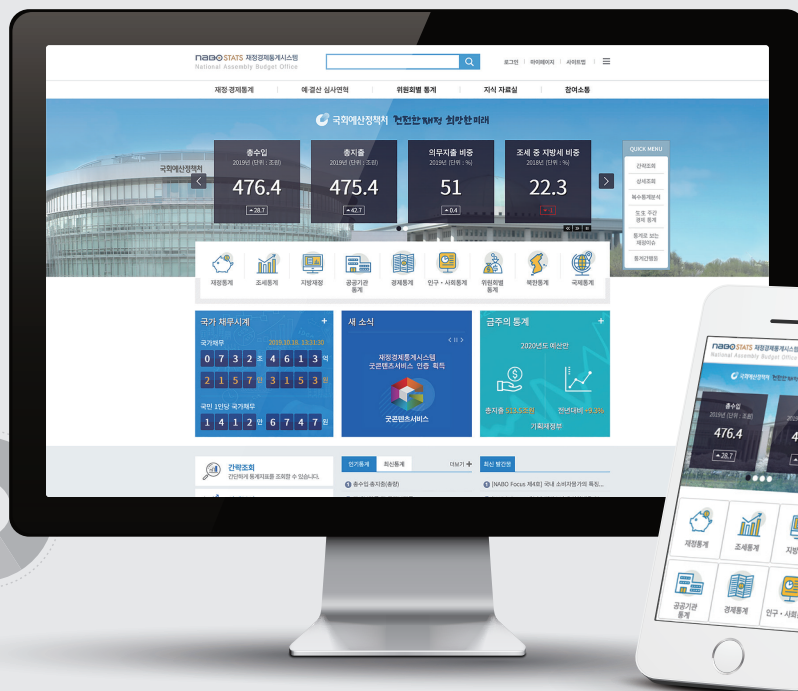
예·결산 심사연혁
위원회별 통계



국제통계
(OECD·IMF 등)



북한통계



* NABOSTATS의 모든 통계정보는 모바일 웹 또는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업선된 주요 통계는 매년 경제재정수첩, 조세수첩 등 책자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
희망찬 미래

